

#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503호  
2019. 1. 24. (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예 규]

서울특별시의회 제127호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 4

[입법예고]

제2019-193호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제2019-206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제2019-219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

제2019-230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 고 시

제2019-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9

제2019-32호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 10

제2019-36호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3

제2019-37호 도시관리계획(광진구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1

제2019-38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48

제2019-42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고시 ..... 49

◆ 공 고

제2019-171호 공영 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65

제2019-172호 자동차등록번호판 예비 발급대행자 선정결과 공고 ..... 67

제2019-1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 67

제2019-18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 68

제2019-188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69

제2019-192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 70

제2019-194호 시유특허권 처분 공고 ..... 72

제2019-196호 2019년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 공고 ..... 84

제2019-202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 86

제2019-207호 2019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 87

제2019-222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 89

제2019-242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안) 공람·공고 .....104

**◆ 구 고 시**

제2019-1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광진구) .....107

제2019-8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110

제2019-9호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111

제2019-9호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관악구) .....112

제2019-1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강동구) .....113

**◆ 구 공 고**

제2019-54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성동구) .....117

제2019-52호 대부중개업체 소재확인 공고(광진구) .....118

제2019-112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도봉구) .....119

제2019-113호 도시계획시설[둘리쌍문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도봉구) .....122

제2019-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은평구) .....125

제2019-8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열람공고  
(구로구) .....128

제2019-10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구로구) .....128

제2019-10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131

**◆ 사업소고시**

제2019-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33

제2019-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33  
 제2019-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34

◆ 사업소공고

제2019-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종로소방서) .....135

◆ 기 타

제2019-1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6  
 제2019-15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7  
 제2019-1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7  
 제2019-17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8

**자치법규**

[예규]

◆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127호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 원 철 인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의회예규(제120호)인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에 의거 처리하였으나, 시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여, 2018. 7. 19.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규정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3호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의 개정사항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규정(안 제10조)

나. 조정위원회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1)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 준용(안 제11조)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안 제12조)

다. 조정위원회에 관한 기존 규정 삭제(현행 제11~17조)

라. 산하기관 보유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 정비(안 제7조)

(1)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2) 법에 따라 보장된 전차인(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계약에 한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조례에 명시

마.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관련 행정적 지원 대상에 전차인 명시(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공정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정경제담당관(전화: 02)2133-5158, FAX: 02)768-8852, 이메일: kjjin@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06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안 제6조)

나.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 (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자산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산관리과(전화: 02)2133-3283, FAX: 02)2133-1031, E-mail: changin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19 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행정안전부의 중앙심사 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의 심사의뢰 절차를 간소화하여 적기 재정 투입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1) '12년부터 서울시의 중앙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시(市) 투자심사를 선행한 후, 중앙심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여 왔으나,
  - 2) 중앙심사 대상인 투자사업의 경우 시(市)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중앙심사를 의뢰하도록 함
- 나.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중앙심사 의뢰 대상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심사를 의뢰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중앙심사 대상 사업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의뢰할지 여부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조문 삭제(현행 제5조제2항 삭제)
- 나. 중앙심사 의뢰 대상을 규정한 법령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도록 하고, 중앙심사 의뢰 대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
- 다. 간소화된 중앙심사 의뢰 절차는 규칙의 시행일 이후 중앙심사를 의뢰하는 투자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전화: 02)2133-6870, FAX: 02)2133-0825, E-mail: donggison@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30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 18.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중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급여 지급액이 감소하는 가구가 발생하여, 급여대상 가구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하여 급여액의 감소분을 일시적으로 보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18년 9월 30일 이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급여감소액을 보전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02-2133-7338, FAX: 02-2133-0718, E-mail: liz199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2호(2006.5.1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08-38호(2008.7.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66호(2018.03.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동남권 유통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가. 대로 1-74호선

- 시 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50-14
- 종 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233-10 (금회 : 장지동 803-2)

나. 대로 3-192호선

- 시 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81-7
- 종 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417-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나. 명 칭 : 동남권유통단지 기반시설(대로1-74, 3-192)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기정)	대로	1	74	25~ 55	보조간선 도로	1,960	송파구 문정동 150-14	송파구 장지동 233-10	일반 도로	
시행 (기정)	"	"	"	"	"	1,072	"	송파구 장지동 803-2	일반 도로	
결정 (기정)	대로	3	192	27	도시고속 도로	9,416	송파구 장지동 717	광진구 노유동 964	자동차 전용도로	
시행 (기정)	"	"	"	5~7	"	482	송파구 문정동 381-7	송파구 문정동 417-3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램프 신설

- 4. 사업 시행자 명칭 및 주소, 성명 : 변경
  -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나. 성 명 (변경)
    - 당 초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 변 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변경
  - 가. 당 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나. 변 경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8.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02-2133-2338)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0)에 관련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 32호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91호(2004.11.25)로 유통단지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39호(2005.11.10) 실시계획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60호(2007.1.4)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14호(2007.4.26)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40호(2008.10.2)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5호(2010.3.18)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91호(2011.12.22)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6호(2012.8.9)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5호(2013.1.31) 실시계획 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57호(2014.12.26) 실시계획 변경승인, 제2016-426호(2016.12.29)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67호(2018.03.15.)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남권유통단지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I. 물류단지 변경지정

1.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서울동남권유통단지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280 일원
- 면 적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계	560,694.0	560,717.3	증23.3㎡
1공구	154,589.0		준공
2공구	145,067.0		준공
3공구	261,038.0	261,061.3	증23.3㎡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물류체계를 효율화하여 물류비 절감
- 유통체계개선과 유통산업발전을 도모
- 물류 및 청계천 전문상가 이주단지를 포함한 상류시설을 집단화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유도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변경없음)
-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 대표자의 성명 : 사장 김세용

4.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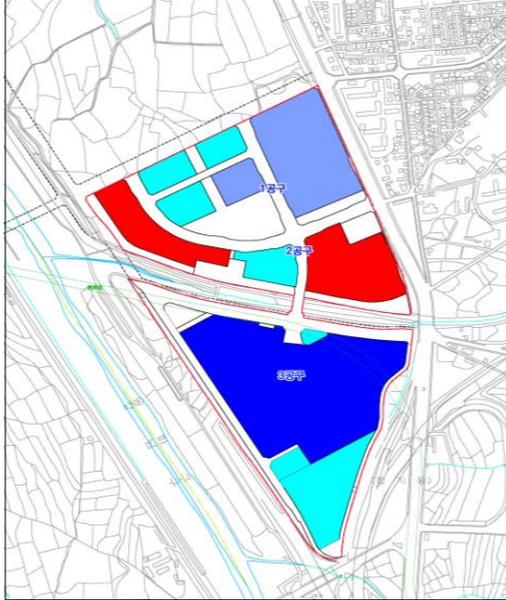
- 시행기간
  - 기정 : 2004. 11. 25 ~ 2018. 12. 31
  - 변경 : 2004. 11. 25 ~ 2019. 12. 31
- 시행방법 : 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 민간개발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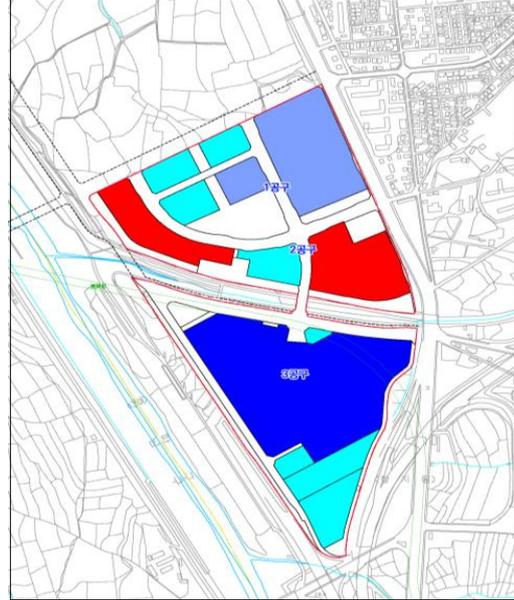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1공구	2공구	3공구		전체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54,589.0	145,067.0	261,038.0	261,061.3	560,694.0	560,717.3	증23.3	
물류 단지 시설	계	-	70,166.3	147,112.0	147,112.0	217,278.3	217,278.3	
	물류	-	-	147,112.0	147,112.0	147,112.0	147,112.0	
	상류	-	70,166.3	-	-	70,166.3	70,166.3	
지원시설	103,778.4	13,355.7	43,188.0	43,188.0	160,322.1	160,322.1		
공공시설	50,810.6	61,545.0	70,738.0	70,761.3	183,093.6	183,116.9	증23.3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토지이용계획표 (변경)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1공구	2공구	3공구		전체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54,589.0	145,067.0	261,038.0	261,061.3	560,694.0	560,717.3	100.0%				
물류 단지 시설	합 계	-	70,166.3	147,112.0	147,112.0	217,278.3	217,278.3	38.7%			
	물류 시설	복합시설(물류)	-	-	147,112.0	147,112.0	147,112.0	147,112.0	26.2%		
	상류 시설	전문 상가	소계	-	70,166.3	-	-	70,166.3	70,166.3	12.5%	
			1	-	41,732.1	-	-	41,732.1	41,732.1	7.4%	
			2	-	28,434.2	-	-	28,434.2	28,434.2	5.1%	
지원 시설	합 계	103,778.4	13,355.7	43,188.0	43,188.0	160,322.1	160,322.1	28.6%			
	가공·제조	-	13,355.7	-	-	13,355.7	13,355.7	2.4%			
	주유소	-	-	2,108.0	2,108.0	2,108.0	2,108.0	0.4%			
	열공급설비	-	-	5,380.0	5,380.0	5,380.0	5,380.0	1.0%			
	업무 시설	소계	19,691.2	-	-	-	19,691.2	19,691.2	3.5%		
		1	10,416.0	-	-	-	10,416.0	10,416.0	1.9%		
		2	9,275.2	-	-	-	9,275.2	9,275.2	1.6%		
	복합 시설 (지원)	소계	72,598.1	-	-	-	72,598.1	72,598.1	12.9%		
		1	11,367.1	-	-	-	11,367.1	11,367.1	2.0%		
		2	61,231.0	-	-	-	61,231.0	61,231.0	10.9%		
	교육복합시설	11,489.1	-	-	-	11,489.1	11,489.1	2.0%			
폐기물처리시설	-	-	35,700.0	35,700.0	35,700.0	35,700.0	6.4%				

공공 시설	계	50,810.6	61,545.0	70,738.0	70,761.3	183,093.6	183,116.9	32.7%		
	도로	소계	18,121.6	29,958.1	45,471.0	45,576.0	93,550.7	93,655.7	16.7%	
		보행	-	253.1	-	-	253.1	253.1	0.1%	
		일반	18,121.6	29,705.0	45,471.0	45,576.0	93,297.6	93,402.6	16.6%	
	공원	소계	32,689.0	16,196.6	-	-	48,885.6	48,885.6	8.7%	
		근공1	27,289.9	-	-	-	27,289.9	27,289.9	4.9%	
		근공2	5,399.1	5,986.7	-	-	11,385.8	11,385.8	2.0%	
		근공3	-	10,209.9	-	-	10,209.9	10,209.9	1.8%	유수지 1개소 포함
	녹지	소계	-	15,312.3	20,845.0	20,705.1	36,157.3	36,017.4	6.4%	
		경관1	-	7,958.2	-	-	7,958.2	7,958.2	1.4%	
		경관2	-	7,354.1	-	-	7,354.1	7,354.1	1.3%	
		경관3	-	-	1,346.0	1,306.1	1,346.0	1,306.1	0.2%	
		완충1	-	-	11,532.0	11,474.8	11,532.0	11,474.8	2.1%	철탑 1개소 포함
		완충2	-	-	7,967.0	7,924.2	7,967.0	7,924.2	1.4%	철탑 1개소 포함
	저류시설	-	-	4,017.0	4,075.5	4,017.0	4,075.5	0.7%	공원내 중복면적 제외	
	철도	소계	-	78.0	405.0	404.7	483.0	482.7	0.2%	
		철도1	-	78.0	-	-	78.0	78.0	0.1%	8호선 출입구
철도2		-	-	405.0	404.7	405.0	404.7	0.1%	분당선 환기구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도로계획 (변경)

구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11	2	3	6	3,343	616	911	1,816	93,550.7	93,655.7	18,121.6	29,958.1	45,471.0	45,576.0		
일반도로	계	-	10	2	2	6	3,318	616	886	1,816	93,297.6	93,402.6	18,121.6	29,705.0	45,471.0	45,576.0	
	광로	-	-	-	-	-	-	-	-	-	2,737.6	2,737.6	1,348.9	1,388.7	-	-	승패대로 완화차로
	대로	25~55	6	1	2	3	2,046	335	886	825	66,987.3	66,642.6	11,048.0	28,316.3	27,623.0	27,278.3	1개노선 2,3공구 중복
	중로	20	2	1	-	1	1,037	281	-	756	21,035.7	21,444.7	5,724.7	-	15,311.0	15,720.0	
	소로	10~11	2	-	-	2	235	-	-	235	2,537.0	2,577.7	-	-	2,537.0	2,577.7	
특수도로	소로	10	1	-	1	-	25	-	25	-	253.1	253.1	-	253.1	-	-	보행자 전용도로

2) 유수지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m <sup>2</sup> )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483.0	482.7	-	78.0	405.0	404.7	감0.3
철도	철1	문정동 217일원	78.0	78.0	-	78.0	-	-	
	철2	장지동 233-7일원	405.0	404.7	-	-	405.0	404.7	감0.3

3) 공원●녹지계획 (변경)

○ 공 원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	48,885.6	32,689.0	16,196.6	-	
근린 공원	근1	문정동 86-1일원	27,289.9	27,289.9	-	-	
	근2	문정동 546일원	11,385.8	5,399.1	5,986.7	-	
	근3	문정동 572일원	10,209.9	-	10,209.9	-	

○ 녹 지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36,157.3	36,017.4	-	15,312.3	20,845.0	20,705.1	감139.9
경관 녹지	소계	-	16,658.3	16,618.4	-	15,312.3	1,346.0	1,306.1	감39.9
	경1	문정동 414-2일원	7,958.2	7,958.2	-	7,958.2	-	-	
	경2	문정동 586일원	7,354.1	7,354.1	-	7,354.1	-	-	
	경3	장지동 800-2일원	1,346.0	1,306.1	-	-	1,346.0	1,306.1	감39.9
원충 녹지	소계	-	19,499.0	19,499.0	-	-	19,499.0	19,399.0	감100.0
	원1	장지동 706-14일원	11,532.0	11,474.8	-	-	11,532.0	11,474.8	감57.2
	원2	장지동 636-7일원	7,967.0	7,924.2	-	-	7,967.0	7,924.2	감42.8

4) 우수지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7,123	7,181.5	-	3,106	4,017	4,075.5	증58.5
우수지	유1	송파구 문정동 292-2일원	3,106	3,106.0	-	3,106	-	-	근린공원3내 중복결정
	유2	송파구 장지동 800일원	4,017	4,075.5	-	-	4,017	4,075.5	증58.5

5) 공급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구분	계획용량	공급계획
상수공급	계획급수량: 14,345m <sup>3</sup> /일	- 서울시 송파구 장지지역의 상수 공급은 송파대로에 기 매설된 광암정수장 수계의 기존 배수관로(D700mm ~ D500mm)에서 분기하여 지구내 계획도로로 인입시켜 배수관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단지내 용수 수요량은 유통단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종사례 조사를 이용하여 급수계획 인구적용은 목표년도 2017년의 지표를 적용하여 산출한 후 단지내 배수관망을 형성하여 공급토록 한다
오수처리	계획오수량: 18,858m <sup>3</sup> /일	- 본 사업지구는 처리구역상 장지배수분구 탄천처리구역에 위치하며, 사업지구 발생오수는 분류식으로 장지천 기준 북측부지는 탄천 및 장지천정비공사(송파구청) 신설차집관로 D800mm에 연결하고, 남측부지는 기존 D800mm 관로에 연결하여 탄천물재생센터 로 유입처리토록 계획수립
에너지공급	가스터빈 32mw 보일러 30ton/hr × 2기 냉방기기 60.5Gcal/hr 신재생에너지 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45kw	- 본 사업지구는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임

6. 주요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유치시설

- 단지내 시설은 물류단지시설(물류시설, 상류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로 구분
- 물류시설에는 물류터미널, 공동집배송센터, 차고지 등이 복합된 복합시설(물류)이 포함되며 상류시설에는 전문상가가 포함됨
- 지원시설에는 복합시설, 교육복합시설, 업무시설, 열공급설비,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있고 공공시설에는 도로, 공원, 녹지, 유수지 등이 포함됨

나. 설치기준

- 시설의 설치기준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물류단지개발지침 제11조에 의하며 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등에 관한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7.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 생략)

9.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 생략)

10.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없음

11. 관련도서 열람방법

주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2133-2338),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3410-7590)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II.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서울동남권유통단지

2. 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 대표자의 성명 : 김세용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목 적

- 물류체계를 효율화하여 물류비 절감
- 유통체계개선과 유통산업발전을 도모
- 물류 및 창계천 전문상가 이주단지를 포함한 상류시설을 집단화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유도

나. 개 요 (변경)

물류단지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1공구	2공구	3공구	전체		
계		-	70,166.3	147,112.0	217,278.3	100.0%	
물류시설	복합시설(물류)	-	-	147,112.0	147,112.0	67.7%	
상류시설	전문상가	소계	70,166.3	-	70,166.3	32.3%	
		1	41,732.1	-	41,732.1	19.2%	
		2	28,434.2	-	28,434.2	13.1%	

지원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1공구	2공구	3공구	전체			
지원 시설	계	103,778.4	13,355.7	43,188.0	160,322.1	100.0%		
	가공·제조	-	13,355.7	-	13,355.7	8.3%		
	주유소	-	-	2,108.0	2,108.0	1.3%		
	열공급설비	-	-	5,380.0	5,380.0	3.3%		
	업무 시설	소계	19,691.2	-	-	19,691.2	12.3%	
		1	10,416.0	-	-	10,416.0	6.5%	
		2	9,275.2	-	-	9,275.2	5.8%	
	복합 시설 (지원)	소계	72,598.1	-	-	72,598.1	45.3%	
		1	11,367.1	-	-	11,367.1	7.1%	
		2	61,231.0	-	-	61,231.0	38.2%	
	교육복합시설	11,489.1	-	-	11,489.1	7.2%		
폐기물처리시설	-	-	35,700.0	35,700.0	22.3%			

공공시설계획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1공구	2공구	3공구		전체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 시설	계	50,810.6	61,545.0	70,738.0	70,761.3	183,093.6	183,116.9	100.0%		
	도로	소계	18,121.6	29,958.1	45,471.0	45,576.0	93,550.7	93,655.7	51.1%	
		보행	-	253.1	-	-	253.1	253.1	0.1%	
		일반	18,121.6	29,705.0	45,471.0	45,576.0	93,297.6	93,402.6	51.0%	
	공원	32,689.0	16,196.6	-	-	48,885.6	48,885.6	26.7%	유수지 1개소 포함	
	녹지	-	15,312.3	20,845.0	20,705.1	36,157.3	36,017.4	19.7%	철탑 2개소 포함	
	저류시설	-	-	4,017.0	4,075.5	4,017.0	4,075.5	2.2%	공원내 중복면적 제외	
	철도	-	78.0	405.0	404.7	483.0	482.7	0.3%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280 일원
- 면 적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계	560,694.0	560,717.3	증23.3
1공구		154,589.0	
2공구		145,067.0	
3공구	261,038.0	261,061.3	증23.3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시행기간
  - 당초 : 2004. 11. 25 ~ 2018. 12. 31
  - 변경 : 2004. 11. 25 ~ 2019. 12. 3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60,694.0	증)23.3	560,717.3	100.0	
상업 지역	소계	559,057.0	증)23.6	559,080.6	99.7	
	유통상업 지역	559,057.0	증)23.6	559,080.6	99.7	
녹지 지역	소계	1,637.0	감)0.3	1,636.7	0.3	
	생산 녹지 지역	1,637.0	감)0.3	1,636.7	0.3	
	자연 녹지 지역	-	-	-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총괄표

구 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가정	변경	증감	가정	변경	증감	가정	변경	증감			
합 계	-	11	-	-	3,343	-	-	93,550.7	93,655.7	증105.0			
일 반 도 로	계	-	10	-	-	3,318	-	-	93,297.6	93,402.6	증105.0		
	광로	소계	-	-	-	-	-	-	2,737.6	2,737.6	-		
		2류	-	-	-	-	-	-	2,737.6	2,737.6	-	승파대로 완화차로	
	대로	소계	-	6	-	-	2,046	-	-	66,987.3	66,642.6	감344.7	
		1류	25~55	2	-	-	767	-	-	25,987.0	25,641.6	감345.4	
		2류	30	2	-	-	1,060	-	-	34,931.3	34,931.3	-	
	3류	25~31	2	-	-	219	-	-	6,069.0	6,069.7	증0.7	1개노선 2,3공구중복	
		소계	-	2	-	-	1,037	-	-	21,035.7	21,444.7	증409	
	중로	1류	20	2	-	-	1,037	-	-	21,035.7	21,444.7	증409	
		소계	-	2	-	-	235	-	-	2,537.0	2,577.7	증40.7	
	소로	1류	10~11	2	-	-	235	-	-	2,537.0	2,577.7	증40.7	
특수 도로		1류	10	1	-	-	25	-	-	253.1	253.1	-	보행자 전용도로

주1) 각 시설별 면적에는 가각 및 완화차로 등의 면적을 포함

주2) 지구외 연장 및 면적은 미포함

○ 공구별 총괄표

구 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가정	변경				가정	변경		
합계	-	11	2	3	6	3,343	616	911	1,816	93,550.7	93,655.7	18,121.6	29,958.1	45,471.0	45,576.0			
일 반 도 로	계	-	10	2	2	6	3,318	616	886	1,816	93,297.6	93,402.6	18,121.6	29,705.0	45,471.0	45,576.0		
	광로	소계	-	-	-	-	-	-	-	-	2,737.6	2,737.6	1,348.9	1,388.7	-	-		
		2류	-	-	-	-	-	-	-	-	2,737.6	2,737.6	1,348.9	1,388.7	-	-	승파대로 완화차로	
	대로	소계	-	6	1	2	3	2,046	335	886	825	66,987.3	66,642.6	11,048.0	28,316.3	27,623.0	27,278.3	
		1류	25~55	2	-	-	2	767	-	-	767	25,987.0	25,641.6	-	-	25,987.0	25,641.6	
		2류	30	2	1	1	-	1,060	335	725	-	34,931.3	34,931.3	11,048.0	23,883.3	-	-	
	3류	25~31	2	-	1	1	219	-	161	58	6,069.0	6,069.7	-	4,433.0	1,636.0	1,636.7	1,636.7	1개노선 2,3공구중복
		소계	-	2	1	-	1	1,037	281	-	756	21,035.7	21,444.7	5,724.7	-	15,311.0	15,720.0	
	중로	1류	20	2	1	-	1	1,037	281	-	756	21,035.7	21,444.7	5,724.7	-	15,311.0	15,720.0	
		소계	-	2	-	-	2	235	-	-	235	2,537.0	2,577.7	-	-	2,537.0	2,577.7	
	소로	1류	10~11	2	-	-	2	235	-	-	235	2,537.0	2,577.7	-	-	2,537.0	2,577.7	
특수 도로		1류	10	1	-	1	25	-	25	-	253.1	253.1	-	253.1	-	-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가정	광로	2	29	50	주간선	8,000	잠실대교	성남시계	일반 도로	-	건고사-198호 71.4.7	
가정	대로	1	74	25~ 55	보조간선	2,313 (721)	문정동 150-14	송파 대로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6-172호 2006. 5.11	3공구
변경	대로	1	74	25 ~ 55	보조간선	2,313 (721)	문정동 150-14	송파 대로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6-172호 2006. 5.11	측량성과반영, 3공구 면적 변경
가정	대로	2	1	30	보조간선	725	송파 대로	북측 구역계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5-339호 2005.11.10	2공구
가정	대로	2	2	30	보조간선	335	북측 구역계	대로2-1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5-339호 2005.11.10	1공구
가정	대로	3	1	25 ~ 31	집산도로	161	대로 2-1	대로 1-74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5-339호 2005.11.10	2공구 입체적결정(42m)
						58						3공구
변경	대로	3	1	25 ~ 31	집산도로	161	대로 2-1	대로 1-74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5-339호 2005.11.10	2공구 입체적결정(42m)
						58						측량성과반영, 3공구 면적 변경
가정	대로	1	1	38	집산도로	46	대로 1-74	장지동 700-5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5-339호 2005.11.10	3공구
변경	대로	1	1	38	집산도로	46	대로 1-74	장지동 700-5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5-339호 2005.11.10	측량성과반영, 3공구 면적 변경
가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281	대로2-1	대로2-2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5-339호 2005.11.10	1공구
가정	중로	1	411	20	집산도로	756	장지동 769-1	소로1-1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6-172호 2006.5.11	3공구
변경	중로	1	411	20	집산도로	756	장지동 769-1	소로1-1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6-172호 2006.5.11	측량성과반영, 3공구 면적 변경
가정	소로	1	1	11	집산도로	141	교통광장	중로1-411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5-339호 2005.11.10	3공구
변경	소로	1	1	11	집산도로	141	교통광장	중로1-411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5-339호 2005.11.10	측량성과반영, 3공구 면적 변경
가정	소로	1	3	10	특수도로	25	대로2-1	근린공원3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 제2006-460호 2007.1.4	2공구 입체적결정
가정	소로	1	4	10	집산도로	94	중로1-2	장지동 676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7-114호 2007.4.26	3공구
변경	소로	1	4	10	집산도로	94	중로1-2	장지동 676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7-114호 2007.4.26	측량성과반영, 3공구 면적 변경

주 : ( )은 지구내 연장

2) 철도 결정(변경)조서  
 ○ 철도(환기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노선명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지하철 8호선	철도	도시철도 (장지정거장)	문정동 217일대	5,890 (808)	-	5,890 (808)	서고 제1994-104호 (1994.03.30)	근린공원과 일부중복결정 2공구
기정	분당선	철도	고속철도 (환기구)	장지동 233-7일원	1,427	-	1,427	서고시 제1994-271호 (1994.8.11)	3공구

주 : ( )은 지구내 면적

3)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689.0	-	32,689.0	16,196.6	-	16,196.6	-		
기정	1	공원	근린 공원	문정동 286-1일원	27,289.9	-	27,289.9	-	-	-	-	서고시 제2005-339호 '05.11.10	유통 상업
기정	2	공원	근린 공원	문정동 546일원	5,399.1	-	5,399.1	5,986.7	-	5,986.7	-	서고시 제2005-339호 '05.11.10	유통 상업
기정	3	공원	근린 공원	문정동 572일원	-	-	-	10,209.9	-	10,209.9	-	서고시 제2006-460호 '07.1.4	유통 상업

주: 근린공원3에는 저류시설 (3,106㎡) 중복

4)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개소	-	15,312.3	-	15,312.3	20,845.0	감139.9	20,705.1		
소계				3개소	-	15,312.3	-	15,312.3	1,346.0	감39.9	1,306.1		
기정	1	녹지	경관 녹지	문정동 414-2일원	-	7,958.2	-	7,958.2	-	-	-	서고시 제2005-339호 '05.11.10	유통 상업
기정	2	녹지	경관 녹지	문정동 586일원	-	7,354.1	-	7,354.1	-	-	-	서고시 제2005-339호 '05.11.10	유통 상업
변경	3	녹지	경관 녹지	장지동 800-2일원	-	-	-	-	1,346.0	감39.9	1,306.1	서고시 제2008-340호 '08.10.2	유통 상업
소계				2개소	-	-	-	-	19,499.0	감100.0	19,399.0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장지동 706-14일원	-	-	-	-	11,532.0	감57.2	11,474.8	서고시 제2005-339호 '05.11.10	유통 상업
변경	2	녹지	완충 녹지	장지동 636-7일원	-	-	-	-	7,967.0	감42.8	7,924.2	서고시 제2005-339호 '05.11.10	유통 상업

5)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7,123.0	증58.5	7,181.5	-	3,106	4,017.0	증58.5	4,075.5		
기정	1	유수지	저류 시설	문정동 292-2일원	3,106.0	-	3,106.0	-	3,106	-	-	-	-	서고시 제2005-339호 '05.11.10	유통 상업
변경	2	유수지	저류 시설	장지동 800일원	4,017.0	증58.5	4,075.5	-	-	4,017.0	증58.5	4,075.5	서고시 제2005-339호 '05.11.10	유통 상업	

주 : 유수지1은 근린공원3내에 중복결정

6)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전기공급설비	장지동 769-7 일원	150.0	증0.5	150.5	-	-	150.0	증0.5	15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40호 2008. 10. 2	원충녹지 중복
변경	2	전기공급설비	장지동 617-9 일원	150.0	감42.5	107.5	-	-	150.0	감42.5	107.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40호 2008. 10. 2	원충녹지 중복

7)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1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 처리시설	장지동 692-2일원	35,700	-	-	35,700	서고시 제1996-148호 '96.6.3	유통 상업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구역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80 일원	560,694.0	증23.3	560,717.3	

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같으므로 게재 생략 -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공구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1BL	22,023.4	1-1	문정동 397-11일원	10,416.0	-	10,416.0	분할가능선에 의해 2개획지로 분할 가능
			1-2	문정동 400-7일원	9,275.2	-	9,275.2	분할가능선에 의해 2개획지로 분할 가능
	2BL	47,813.9	2-1	문정동 408-1일원	11,489.1	-	11,489.1	분할가능선에 의해 3개획지로 분할 가능
			2-2	문정동 297일원	11,367.1	-	11,367.1	-
	5BL	66,630.1	5-1	문정동 276일원	61,231.0	-	61,231.0	-
3공구	3BL	2,108.0	3-1	장지동 245-21일원	2,108.0	-	2,108.0	-
	4BL	35,700.0	4-1	장지동 692-2일원	35,700.0	감18,176.4	17,523.6	-
			4-2	장지동 695-1일원	-	증18,176.4	18,176.4	-

주) 획지분할가능선이 계획된 획지는 분할가능선에 의해서 분할이 가능하며, 분할된 후 분할 전으로의 합병도 가능함.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가) 지원시설용지

- 1BL (변경없음 생략)
- 2BL (변경없음 생략)
- 3BL (변경없음 생략)
- 4BL (변경)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4BL	4-1	4-1	용도	•지정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의 폐기물처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의
		4-2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5BL (변경없음 생략)

-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생략)
-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생략)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 조서

- 1) 사업시행자 귀속분
  - 무상귀속분 총괄표

구분		합계	전	답	도로	구거	잡종지	하천	제방	묘지	철도			
합계	필지수	기정	107	16	1	32	13	20	21	3	1	-		
		변경	120	29	1	28	13	23	21	3	1	1		
	면적(㎡)	기정	18,969	3,144	6	3,615	1,185	5,425	5,569	22	3	-		
		변경	53,547	20,620	6	3,505	1,185	22,425	5,649	22	3	132		
국유지	소계	필지수	기정	19	1	1	10	2	-	4	-	1		
			변경	16	1	1	6	2	-	4	-	1	1	
		면적(㎡)	기정	925	217	6	259	59	-	381	-	3	-	
			변경	947	217	6	149	59	-	381	-	3	132	
	국토 해양부	필지수	기정	16	-	-	10	2	-	4	-	-		
			변경	13	-	-	6	2	-	4	-	-	1	
		면적(㎡)	기정	699	-	-	259	59	-	381	-	-	-	
			변경	721	-	-	149	59	-	381	-	-	132	
	지식 경제부	필지수	기정	3	1	1	-	-	-	-	-	1	-	
			변경	3	1	1	-	-	-	-	-	1	-	
		면적(㎡)	기정	226	217	6	-	-	-	-	-	3	-	
			변경	226	217	6	-	-	-	-	-	3	-	
	공유지	소계	필지수	기정	88	15	-	22	11	20	17	3	-	
				변경	104	28	-	22	11	23	17	3	-	
			면적(㎡)	기정	18,044	2,927	-	3,356	1,095	5,425	5,188	22	-	-
				변경	52,600	20,403	-	3,356	1,126	22,425	5,268	22	-	-
서울시		필지수	기정	41	4	-	4	5	15	10	3	-		
			변경	42	4	-	4	5	16	10	3	-		
		면적(㎡)	기정	9,288	1,638	-	616	308	4,674	2,030	22	-		
			변경	20,576	1,638	-	616	308	15,882	2,110	22	-		
송파구		필지수	기정	47	11	-	18	6	5	7	-	-		
			변경	62	24	-	18	6	7	7	-	-		
		면적(㎡)	기정	8,756	1,289	-	2,740	818	751	3,158	-	-		
			변경	32,024	18,765	-	2,740	818	6,543	3,158	-	-		

○ 유상귀속분 총괄표

구분		합계	전	답	대지	도로	구거	잡종지	하천	묘지	철도		
합계	필지수	기정	122	38	3	2	30	4	38	5	1	1	
		변경	93	18	3	2	32	4	30	3	1	-	
	면적 (㎡)	기정	76,402	21,243	389	81	7,126	751	43,751	2,830	99	132	
		변경	41,824	3,767	389	81	7,236	751	26,751	2,750	99	-	
국유지	소계	필지수	기정	32	3	2	1	22	1	1	-	1	1
			변경	33	3	2	1	24	1	1	-	1	-
		면적 (㎡)	기정	4,236	589	358	71	2,816	117	54	-	99	132
			변경	4,214	589	358	71	2,926	117	54	-	99	-
	국토 해양부	필지수	기정	24	-	1	-	22	1	-	-	-	-
			변경	26	-	1	-	24	1	-	-	-	-
		면적 (㎡)	기정	3,905	-	162	-	2,816	117	-	-	-	-
			변경	3,205	-	162	2,926	117	-	-	-	-	-
	지식 경제부	필지수	기정	7	3	1	1	-	-	1	-	1	-
			변경	7	3	1	1	-	-	1	-	1	-
		면적 (㎡)	기정	1,009	589	196	71	-	-	54	-	99	-
			변경	1,009	589	196	71	-	-	54	-	99	-
	철도청	필지수	기정	1	-	-	-	-	-	-	-	-	1
			변경	-	-	-	-	-	-	-	-	-	-
		면적 (㎡)	기정	132	-	-	-	-	-	-	-	-	132
			변경	-	-	-	-	-	-	-	-	-	-
공유지	소계	필지수	기정	90	35	1	1	8	4	37	5	-	-
			변경	60	15	1	1	8	3	29	3	-	-
		면적 (㎡)	기정	72,166	20,654	31	10	4,310	665	43,697	2,830	-	-
			변경	37,610	3,178	31	10	4,310	634	26,697	2,750	-	-
	서울시	필지수	기정	45	10	1	1	1	-	30	2	-	-
			변경	37	10	1	1	1	-	24	-	-	-
		면적 (㎡)	기정	36,040	1,643	31	10	4	-	34,272	80	-	-
			변경	24,752	1,643	31	10	4	-	23,064	-	-	-
	송파구	필지수	기정	45	25	-	-	7	3	7	3	-	-
			변경	23	5	-	-	7	3	5	3	-	-
		면적 (㎡)	기정	36,126	19,011	-	-	4,306	634	9,425	2,750	-	-
			변경	12,858	1,535	-	-	4,306	634	3,633	2,750	-	-

- 소관청별 토지조서
- 국토해양부 (변경없음)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문정동	299-1	도	10	10	국토해양부	1	9	
2	장지동	216-16	도	60	60	국토해양부	19	41	
3	장지동	218-11	도	46	46	국토해양부	46	-	
4	장지동	221-1	도	64	64	국토해양부	64	-	
5	장지동	235-1	천	122	122	국토해양부	122	-	
6	장지동	235	천	60	60	국토해양부	60	-	
7	장지동	606-4	도	289	289	국토해양부	-	289	
8	장지동	613-14	도	9	9	국토해양부	-	9	
9	장지동	613-15	도	4	4	국토해양부	-	4	
10	장지동	614-13	도	71	71	국토해양부	-	71	
11	장지동	617-7	도	3	3	국토해양부	-	3	
12	장지동	617-8	도	92	92	국토해양부	-	92	
13	장지동	617-9	도	250	250	국토해양부	-	250	
14	장지동	618-5	답	216	162	국토해양부	-	162	
15	장지동	618-6	도	21	21	국토해양부	-	21	
16	장지동	620-9	도	222	222	국토해양부	-	222	
17	장지동	636-8	도	199	199	국토해양부	-	199	
18	장지동	637-12	도	76	76	국토해양부	-	76	
19	장지동	637-13	도	82	82	국토해양부	-	82	
20	장지동	638-4	도	26	26	국토해양부	-	26	
21	장지동	638-8	도	153	153	국토해양부	-	153	
22	장지동	638-17	도	42	42	국토해양부	-	42	
23	장지동	638-12	도	9	9	국토해양부	-	9	
24	장지동	638-13	도	8	8	국토해양부	-	8	
25	장지동	638-18	도	21	21	국토해양부	-	21	
26	장지동	638-19	도	100	100	국토해양부	-	100	
27	장지동	639-14	도	332	332	국토해양부	-	332	
28	장지동	641-9	도	865	865	국토해양부	-	865	
29	장지동	647-40	천	86	86	국토해양부	86	-	
30	장지동	647-41	도	4	4	국토해양부	2	2	
31	장지동	647-42	천	113	113	국토해양부	113	-	
32	장지동	647-43	도	17	17	국토해양부	17	-	
33	장지동	690-2	구	26	26	국토해양부	26	-	
34	장지동	700-15	구	150	150	국토해양부	33	117	
계				3,848	3,794		589	3,205	

- 지식경제부 (변경없음)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장지동	221-8	대	71	71	지식경제부	-	71	
2	장지동	221-9	잡	54	54	지식경제부	-	54	
3	장지동	224-1	전	337	337	지식경제부	217	120	
4	장지동	224-5	답	202	202	지식경제부	6	196	
5	장지동	224-7	전	205	205	지식경제부	-	205	
6	장지동	666	전	264	264	지식경제부	-	264	
7	장지동	690-1	묘	102	102	지식경제부	3	99	
계				1,235	1,235		226	1,009	

- 철도청 (변경)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기정	장지동	664-8	철	132	132	철도청	-	132	
	변경	장지동	664-8	철	132	132	국토교통부	132	-	

- 서울시 (변경)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기정	문정동	273-10	대	10	10	서울시	-	10	
2	기정	문정동	274-17	도	250	250	서울시	250	-	
3	기정	문정동	411-11	잡	3,450	3,450	서울시	57	3,393	
4	기정	문정동	411-12	잡	285	285	서울시	5	280	
5	기정	문정동	414-5	제	11	11	서울시	11	-	
6	기정	문정동	416-11	제	8	8	서울시	8	-	
7	기정	문정동	416-12	제	3	3	서울시	3	-	
8	기정	장지동	218-10	도	18	18	서울시	14	4	
9	기정	장지동	233-5	잡	9,362	9,362	서울시	1,202	8,160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233-5	잡	9,362	9,362	서울시	9,362	-	
10	기정	장지동	233-18	잡	194	194	서울시	1	193	추가편입지
11	기정	장지동	233-7	잡	980	980	서울시	-	980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233-7	잡	980	980	서울시	980	-	
12	기정	장지동	233-9	잡	121	121	서울시	36	85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233-9	잡	121	121	서울시	121	-	
13	기정	장지동	233-10	잡	115	115	서울시	24	91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233-10	잡	115	115	서울시	115	-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4	기정	장지동	233-11	잡	339	339	서울시	118	221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233-11	잡	339	339	서울시	339	-	
15	기정	장지동	233-12	잡	406	406	서울시	-	406	
16	기정	장지동	233-17	잡	816	816	서울시	13	803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233-17	잡	816	816	서울시	816	-	
17	기정	장지동	236-2	천	272	272	서울시	272	-	
18	기정	장지동	237-11	전	190	190	서울시	-	190	
19	기정	장지동	237-15	전	455	455	서울시	455	-	
20	기정	장지동	239-16	천	12	12	서울시	12	-	
21	기정	장지동	239-18	천	57	57	서울시	57	-	
22	기정	장지동	239-19	천	295	295	서울시	295	-	
23	기정	장지동	239-20	천	216	216	서울시	216	-	
24	기정	장지동	244-6	천	405	405	서울시	405	-	
25	기정	장지동	245-11	구	27	27	서울시	27	-	
26	기정	장지동	245-12	천	59	59	서울시	59	-	
27	기정	장지동	245-28	구	112	112	서울시	112	-	
28	기정	장지동	245-29	구	16	16	서울시	16	-	
29	기정	장지동	245-51	구	31	31	서울시	31	-	
30	기정	장지동	664-11	답	31	31	서울시	-	31	
31	기정	장지동	705-8	전	27	27	서울시	-	27	
32	기정	장지동	705-9	전	5	5	서울시	-	5	
33	기정	장지동	706-17	전	438	438	서울시	-	438	
34	기정	장지동	706-19	전	10	10	서울시	-	10	
35	기정	장지동	706-21	구	122	122	서울시	122	-	
36	기정	장지동	706-22	전	183	183	서울시	-	183	
37	기정	장지동	707-5	잡	8	8	서울시	-	8	
38	기정	장지동	707-6	잡	17	17	서울시	-	17	
39	기정	장지동	707-7	잡	28	28	서울시	-	28	
40	기정	장지동	707-9	잡	18	18	서울시	-	18	
41	기정	장지동	707-35	잡	36	36	서울시	-	36	
42	기정	장지동	707-36	잡	32	32	서울시	-	32	
43	기정	장지동	707-37	잡	41	41	서울시	-	41	
44	기정	장지동	707-38	잡	35	35	서울시	-	35	
45	기정	장지동	708-1	잡	3,158	3,158	서울시	854	2,304	
46	기정	장지동	708-4	잡	156	156	서울시	-	156	
47	기정	장지동	708-5	잡	43	43	서울시	-	43	
48	기정	장지동	712-12	전	176	176	서울시	-	176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49	기정	장지동	715-1	잡	1,170	1,170	서울시	384	786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715-1	잡	1,170	1,170	서울시	1,170	-	
50	기정	장지동	715-4	도	346	346	서울시	346	-	추가편입지
51	기정	장지동	717-6	잡	302	302	서울시	-	302	
52	기정	장지동	717-8	잡	24	24	서울시	-	24	
53	기정	장지동	717-9	잡	4	4	서울시	-	4	
54	기정	장지동	719-3	전	503	503	서울시	-	503	
55	기정	장지동	719-4	전	87	87	서울시	-	87	
56	기정	장지동	796-7	전	217	217	서울시	217	-	추가편입지
57	기정	장지동	797-2	전	599	599	서울시	575	24	추가편입지
58	기정	장지동	803-22	천	34	34	서울시	32	2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803-22	천	34	34	서울시	34	-	
59	기정	장지동	803-3	잡	10,598	10,598	서울시	887	9,711	추가편입지
60	기정	장지동	803-23	잡	989	989	서울시	422	567	추가편입지
61	기정	장지동	803-5	잡	3,508	3,508	서울시	299	3,209	추가편입지
62	기정	장지동	803-24	잡	219	219	서울시	219	-	추가편입지
63	기정	장지동	803-14	천	8	8	서울시	8	-	
64	기정	장지동	803-15	잡	2,404	2,404	서울시	153	2,251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803-15	잡	2,404	2,404	서울시	235	2,169	
65	기정	장지동	803-16	잡	88	88	서울시	-	88	추가편입지
66	기정	장지동	803-25	천	752	752	서울시	674	78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803-25	천	752	752	서울시	752	-	
67	기정	장지동	807-2	전	391	391	서울시	391	-	추가편입지
68	기정	장지동	831-2	도	6	6	서울시	6	-	추가편입지
계				기정	45,328	45,328		9,288	36,040	
				변경	45,328	45,328		20,576	24,752	

- 송파구 (변경)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기정	문정동	274-13	전	109	109	송파구	9	100	
2	기정	문정동	274-18	구	448	448	송파구	69	379	
3	기정	문정동	411-8	도	751	751	송파구	158	593	
4	기정	문정동	414-6	구	128	128	송파구	128	-	
5	기정	문정동	416-7	도	515	515	송파구	252	263	
6	기정	문정동	416-8	천	2,891	2,891	송파구	717	2,174	
7	기정	장지동	201-27	전	343	343	송파구	60	283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8	기정	장지동	201-28	전	331	331	송파구	-	331	
9	기정	장지동	201-30	도	1,100	1,100	송파구	444	656	
10	기정	장지동	201-31	도	19	19	송파구	19	-	
11	기정	장지동	227-1	구	400	400	송파구	400	-	
12	기정	장지동	232-1	전	807	807	송파구	-	807	
13	기정	장지동	233-1	구	99	99	송파구	57	42	
14	기정	장지동	233-4	구	354	354	송파구	141	213	
15	기정	장지동	233-8	도	4	4	송파구	4	-	추가편입지
16	기정	장지동	233-13	도	515	515	송파구	497	18	
17	기정	장지동	233-14	천	738	738	송파구	738	-	
18	기정	장지동	233-15	천	440	440	송파구	440	-	
19	기정	장지동	245-20	잡	443	443	송파구	8	435	
20	기정	장지동	245-21	잡	2,095	2,095	송파구	357	1,738	
21	기정	장지동	245-22	잡	557	557	송파구	145	412	
22	기정	장지동	245-24	도	63	63	송파구	63	-	
23	기정	장지동	245-25	전	14	14	송파구	-	14	
24	기정	장지동	245-26	도	117	117	송파구	117	-	
25	기정	장지동	245-27	도	96	96	송파구	96	-	
26	기정	장지동	245-37	천	169	169	송파구	169	-	
27	기정	장지동	245-38	도	421	421	송파구	35	386	
28	기정	장지동	245-40	도	506	506	송파구	404	102	
29	기정	장지동	245-41	도	1	1	송파구	1	-	
30	기정	장지동	245-43	천	175	175	송파구	175	-	
31	기정	장지동	245-46	도	30	30	송파구	30	-	
32	기정	장지동	245-47	도	93	93	송파구	93	-	
33	기정	장지동	245-48	잡	438	438	송파구	27	411	
34	기정	장지동	245-49	잡	851	851	송파구	214	637	
35	기정	장지동	245-50	천	556	556	송파구	477	79	
36	기정	장지동	636-1	도	2,417	2,417	송파구	129	2,288	
37	기정	장지동	636-6	도	116	116	송파구	116	-	
38	기정	장지동	665-1	전	397	397	송파구	-	397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665-1	전	397	397	송파구	397	-	
39	기정	장지동	665-2	전	426	426	송파구	36	390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665-2	전	426	426	송파구	426	-	
40	기정	장지동	672-1	구	23	23	송파구	23	-	
41	기정	장지동	697-1	도	90	90	송파구	90	-	
42	기정	장지동	697-41	도	192	192	송파구	192	-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43	기정	장지동	769-7	전	2,111	2,111	송파구	30	2,081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769-7	전	2,111	2,111	송파구	2,111	-	
44	기정	장지동	769-2	전	427	427	송파구	12	415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769-2	전	427	427	송파구	427	-	
45	기정	장지동	769-8	전	1,518	1,518	송파구	45	1,473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769-8	전	1,518	1,518	송파구	1,518	-	
46	기정	장지동	769-6	전	140	140	송파구	2	138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769-6	전	140	140	송파구	140	-	
47	기정	장지동	796-6	전	2	2	송파구	2	-	추가편입지
48	기정	장지동	796-5	전	117	117	송파구	117	-	추가편입지
49	기정	장지동	797	전	5,173	5,173	송파구	852	4,321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797	전	5,173	5,173	송파구	5,173	-	
50	기정	장지동	798	전	727	727	송파구	-	727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798	전	727	727	송파구	727	-	
51	기정	장지동	799	전	727	727	송파구	-	727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799	전	727	727	송파구	727	-	
52	기정	장지동	800-1	전	621	621	송파구	-	621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800-1	전	621	621	송파구	621	-	
53	기정	장지동	800-2	전	827	827	송파구	-	827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800-2	전	827	827	송파구	827	-	
54	기정	장지동	800-3	전	7	7	송파구	-	7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800-3	전	7	7	송파구	7	-	
55	기정	장지동	800	전	628	628	송파구	-	628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800	전	628	628	송파구	628	-	
56	기정	장지동	801-1	전	356	356	송파구	-	356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801-1	전	356	356	송파구	356	-	
57	기정	장지동	801-2	전	259	259	송파구	-	259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801-2	전	259	259	송파구	259	-	
58	기정	장지동	801	전	49	49	송파구	-	49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801	전	49	49	송파구	49	-	
59	기정	장지동	802-1	전	118	118	송파구	-	118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802-1	전	118	118	송파구	118	-	
60	기정	장지동	802	전	530	530	송파구	-	530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802	전	530	530	송파구	530	-	
61	기정	장지동	803-13	천	939	939	송파구	442	497	
62	기정	장지동	804	잡	4,397	4,397	송파구	-	4,397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804	잡	4,397	4,397	송파구	4,397	-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63	기정	장지동	805	전	2,532	2,532	송파구	-	2,532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805	전	2,532	2,532	송파구	2,532	-	
64	기정	장지동	806	잡	1,395	1,395	송파구	-	1,395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806	잡	1,395	1,395	송파구	1,395	-	
65	기정	장지동	807	전	1,004	1,004	송파구	124	880	추가편입지
	변경	장지동	807	전	1,004	1,004	송파구	1,004	-	
계				기정	44,882	44,882		8,756	36,126	
				변경	44,882	44,882		32,024	12,858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 도로

구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10	3,343	93,550.7	93,655.7			
일반도로	계	-	9	3,318	93,297.6	93,402.6		
	광로	소계	-	-	-	2,737.6	2,737.6	
		2류	-	-	-	2,737.6	2,737.6	송파대로 완화차로
	대로	소계	-	5	2,046	66,987.3	66,642.6	
		1류	25~55	2	767	25,987.0	25,641.6	
		2류	30	2	1,060	34,931.3	34,931.3	
	중로	3류	25~31	1	219	6,069.0	6,069.7	
		소계	-	2	1,037	21,035.7	21,444.7	
	1류	20	2	1,037	21,035.7	21,444.7		
		소로	소계	-	2	235	2,537.0	2,577.7
	1류	10~11	2	235	2,537.0	2,577.7		
특수도로		소로	1류	10	1	25	253.1	253.1

○ 공원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48,885.6	
근린공원	근1	문정동 286-1일원	27,289.9	
	근2	문정동 546일원	11,385.8	
	근3	문정동 572일원	10,209.9	

○ 녹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계		-	36,157.3	36,017.4	
경관녹지	소계	-	16,658.3	16,618.4	
	경1	문정동 414-2일원	7,958.2	7,958.2	
	경2	문정동 586일원	7,354.1	7,354.1	
	경3	장지동 800-2일원	1,346.0	1,306.1	
완충녹지	소계	-	19,499.0	19,399.0	
	완1	장지동 706-14 일원	11,532.0	11,474.8	
	완2	장지동 636-7 일원	7,967.0	7,924.2	

○ 유수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계		-	7,123.0	7,181.5	
유수지	유1	문정동 292-2일원	3,106.0	3,106.0	근린공원3내 중복결정
	유2	장지동 800 일원	4,017.0	4,075.5	

○ 철도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계		-	483.0	482.7	
철도	1	문정동 217 일대	78.0	78.0	
	2	장지동 233-7 일원	405.0	404.7	

○ 전기공급설비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계		-	300.0	258.0	
전기공급설비	1	장지동 769-7 일원	150.0	150.5	완충녹지1내 중복결정
	2	장지동 617-9 일원	150.0	107.5	완충녹지2내 중복결정

○ 하천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계		-	1,636.7	
하천	-	장지천 (장지동 769-1 ~ 장지동769-7)	1,636.7	대로3-1내 중복결정

○ 폐기물처리시설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	35,700	
폐기물 처리시설	-	장지동 692-2 일원	35,7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호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주민참여를 통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1) 정비구역의 명칭 :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200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신사동(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	-	증)61,946.9	61,946.9	-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조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조건부가결
  - 공공사업계획이 주민공동이용시설계획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측면에서 조정 검토 필요
  - 구역 내 막다른 도로가 다수 입지하는 바, 보행동선 확보 측면에서 공공보행통로 지정 가능성을 검토할 것.
  -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측면에서 주택개량 등과 연계한 ‘편백나무’ 식재 및 편백나무를 활용한 특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2. 정비계획의 수립

-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사업내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은평구청장	해당 없음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및 신축하는 방법	기한 없음	토지등소유자		

2)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	명칭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61,946.9	-	61,946.9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15,216.4	+ 92	15,308.4	24.7	-	
	도로	현황도로	10,742.3	-	10,742.3	17.3	-
		도시계획도로	2,571.5	-	2,571.5	4.1	-
	녹지	1,098.6	-	1,098.6	1.8	-	
	기타	공동이용시설	0	+ 148	148.0	0.2	-
		노유자시설	341.0		341.0	0.5	-
		나대지 등	463.0	-56	407.0	0.7	-
택지	소계	46,730.5	- 92	46,638.5	75.3	-	
	주택용지	46,422.5	- 92	46,330.5	74.8	-	
	종교용지	308.0	-	308.0	0.5	-	

②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면적(m <sup>2</sup> )			비율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후		
합계	61,946.9	-	61,946.9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4,284.7	-	14,284.7	23.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7,422.8	-	47,422.8	75.6	
제3종일반주거지역	239.4	-	239.4	0.4	

③ 용도지구 결정 조서 (해당 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도로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85	신사동 200-137	신사동 237-446	일반 도로	-	서은고 94-50호 (1994.10.18.)	-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82	신사동 237-469	신사동 237-403	일반 도로	-	서은고 94-37호 (1994.08.03.)	-

4)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5개 분야 18개 사업)

구분	사업개요	사업내용	규모
도로정비	마을길 정비	마을길 포장, 은평터널로 진입부 정비	1,300m
	통신선 정비	불량공중케이블 정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연계
	전신주 이설	불필요한 전신주 이설	3개소
	노후담장 정비	구조보강, 펜스 설치, 경관개선 등	6개소(9개동)
환경정비	봉산 편백숲 연계	봉산가는길 주변 건축가이드라인 운영/ 골목 입면꾸미기/안내판 설치 등	-
	골목길 화분 정리	식재포트 분양	4개소(8개), 주민약속
안전사고 예방	미끄럼방지 포장 등	미끄럼방지 포장	3,200㎡(9개소)
	수해방지 포장	신사동 200-36번지 수해방지구간 포장	486㎡(1개소)
	하수관 정비	노후하수관 정비	822m
	계단 등 설치	계단 및 안전바 설치 /목재 손잡이 권장/계단 미끄럼방지 등	292m(6개소)
	반사경 설치	반사경 설치	9개소
	화재 예방시설 설치	골목소화기/태양광조명블록 및 소방차 통행로 표시/비상소화장치 설치	8개소/3개소/2개소
범죄예방	CCTV 설치	신사어린이집 일대 CCTV설치	6개소
	보안등 설치	보안등(LED) 설치	9개소
	안전사각지대 개선	가스관형광물질도포/미러시트치부착	290개동/권장
공간만들기	주민공간만들기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	신사동 237-383일대
	작은쉼터 만들기	소공원 조성/접이식 평상 설치	1개소/2개소
	마을안내판 설치	마을입구 등 주요 지점에 안내판 설치	3개소

- ※ 상기 구상(안)은 추후 주민협의, 주민동의,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규모, 시행방법, 공사비 등)은 자문 또는 실시설계 추진 결과에 따라 결정 예정.

5)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시행방법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공동이용시설	신사동 237-383 외 1필지	-	증)148	148	부지매입	-

- ※ '18.03.15. 신사동 237-383번지(92㎡) 매입 완료
- ※ 신사동 237-525번지(56㎡)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매입 예정(지적재조사사업 추진중으로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규모, 시행방법, 공사비 등)은 향후 자문 또는 실시설계 추진결과에 따라 결정 예정.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대상건축물	정비·개량계획	지원계획수립	비고
구역전체	별도 지정 없음	주택개량 융자지원, 리모델링활성화지역 등	-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명칭	면적(㎡)				
신설	은평구 신사동 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61,946.9	관련 법령에 따름	관련 법령에 따름	관련 법령에 따름	관련 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관련법령에 따름			
심의완화 사항			관련법령에 따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령에 따름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생활환경	•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권장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 조성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홍수해	• 지역 내 노후 하수관을 교체하고, 도로포장 정비사업 시행 시 배수를 고려하여 진행토록 관리 • 구역 내 강우에 따른 피해발생 지역의 홍수해 대책 수립 및 시행 - 홍수해 예방을 위한 정비계획 마련 - 홍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등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수시 점검 - 붕괴위험 옹벽, 저지대 침수지역, 공사 등 사전예방 조치	-
	화재	•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골목소화기를 비치하고, 주택 리모델링 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유도 • 주요 소방통행로 노면 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록 설치 •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호스릴형 비상소화장치 설치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기존 법령을 따름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세대수 및 인구증가가 없으며,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본 정비구역 중 '교육환경보호구역' 으로 지정된 지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름.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자연감시	•건물(주택)구조는 사람이 은신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계획	민간/공공
	•외벽 창문은 골목길과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민간/공공
	•담장은 주변감시와 골목길의 활용성 등을 고려해 투시형 담장 또는 낮은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고, 필요시 담장 허물기를 적용	민간/공공
	•출입문 주변에는 직접 조명을 설치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 출입시 배후 감시가 가능토록 미러시트지 부착	민간/공공
	•골목길은 전방시야 확보 및 고립된 공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가급적 직선으로 계획하고, 보행자를 위한 조명을 설치	공공
	•주택 주변이나 골목길의 조경수목은 자연감시를 고려해 식재	민간/공공
	•골목길의 가로시설물은 자연감시를 고려해 계획	공공
접근통제	•주택의 출입문에는 시건장치 또는 보안시설을 설치	민간
	•창문에는 파손이나 훼손이 어려운 재질의 방범창을 설치하고, 측벽에 노출된 가스배관은 타고 오르거나 침입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조치	민간/공공
	•주택과 주택사이에 형성되는 이격공간에는 외부인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	민간
영역성 강화	•골목길에서의 주택, 보행공간, 가로시설 및 조경 식재공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	민간
	•주택주변 또는 골목길의 자투리 공간은 영역성 강화와 활용성 증대를 위해 쌈지공원이나 화단 등 조성	민간/공공
	•담장이나 벽면에는 지역 이미지와 환경을 고려한 도색이나 벽화 등의 적용을 권장	민간/공공
	•가로시설물은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계획	공공
	•건축물의 외관은 통일성 있게 계획하도록 유도	민간/공공
활동의 활성화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용도시설의 배치와 디자인을 권장	민간/공공
	•골목길에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배치하여 활성화를 유도	공공
유지관리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	공공
	•집과 창고 수리 및 정원 정비 등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	민간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설치	•방범용 CCTV는 주택가에서 범죄취약공간을 중심으로 감시의 효율성(감시범위, 주변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공공
	•비상벨은 가로등, 전신주, CCTV 주변, 방범시설이 부족한 취약한 공간 등에 설치 하되 경광기능이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며, 보행 중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공공
커뮤니티 조성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방범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	민간/공공

11)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비계획 결정 이후 주민 10%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예정(은평구청장)</li> <li>편백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규약에 의거 운영</li> </ul>	-
주민공동체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답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계획 수립</li> <li>정비계획으로 정하는 권장사항은 주민약속에 포함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준수 및 공동체 활성화 유도</li> </ul>	-

2. 관련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및 은평구(주거재생과)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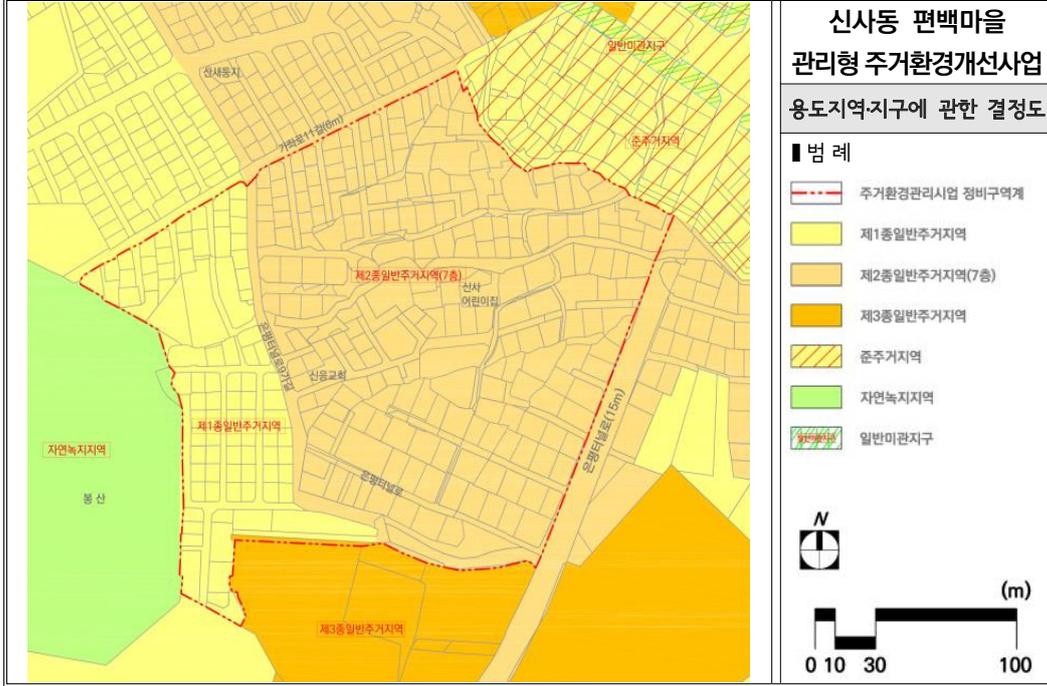
2) 은평구 주거재생과(☎ 02-351-7359)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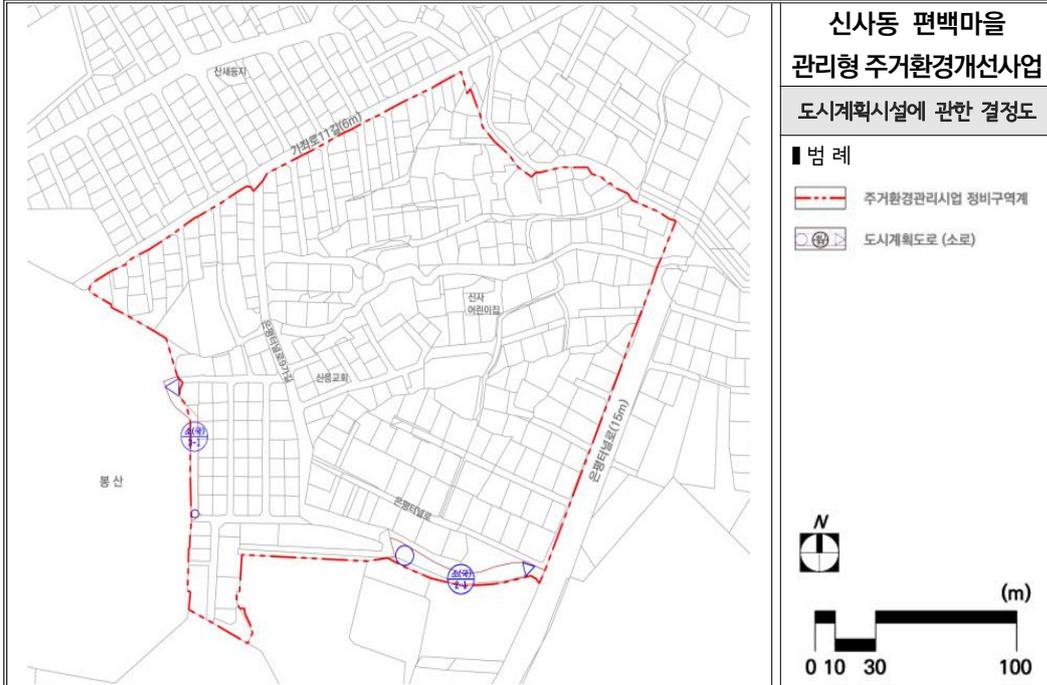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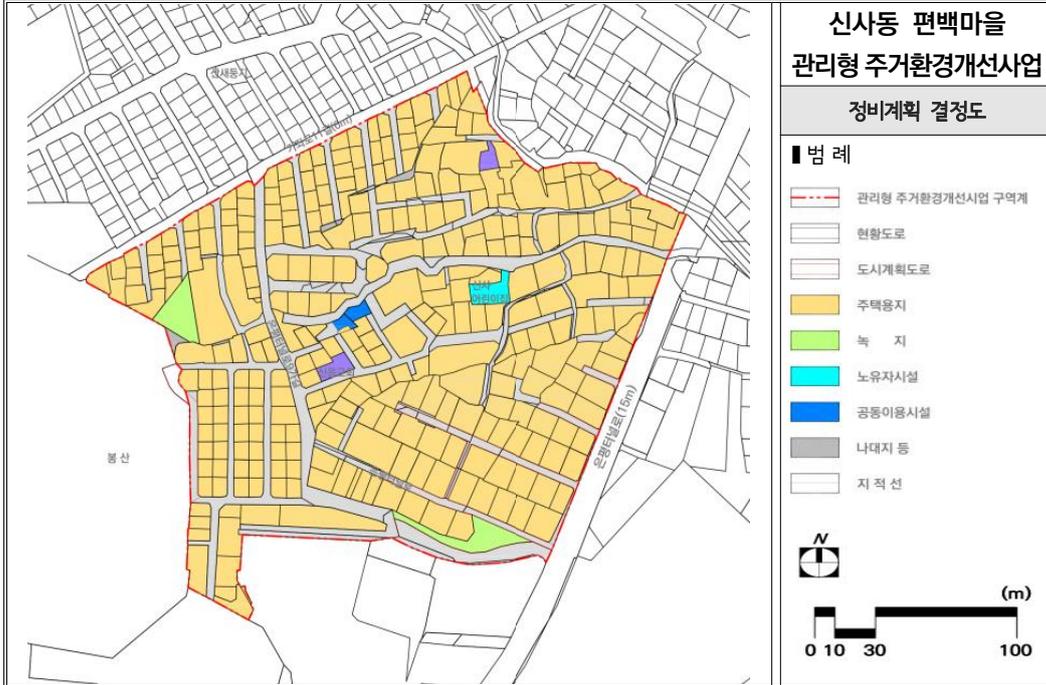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없음)



정비계획 결정도



정비계획 종합도



※ 상기 정비계획 종합도는 추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7호

**도시관리계획(광진구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93-11 『도시관리계획(광진구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8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 12. 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I.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취지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593-11
- 면 적 : 916.2㎡
- 결정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2호선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광진구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593-11	-	증) 916.2	916.2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면 적(㎡)	결정사유	비 고
신 설	광진구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916.2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신설)하고자 함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합 계	916.2	-	916.2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916.2	감) 916.2	-	-	
	준주거지역	-	증) 916.2	916.2	100.0	

나.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광진구 구의동 593-11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9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li> <li>•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 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 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li> </ul>

-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	-	• 광진구 구의동 593-11	916.2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계획내용	결정사유
-	• 광진구 구의동 593-11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지정용도(가)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 광진구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불허용도 (A)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장례식장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	•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신설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를 결정(신설)하고자 함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 광진구 구의동593-11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500%) 이하	
최고높이	• 48m 이하	

주 :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적용함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	용적률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적용함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고자 함
	최고높이	

다. 용적률 적용(의무사항)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5% 이상</li> <li>추가공공기여율 - 추가용적률 연면적의 50% 이상을 부지면적으로 환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231.40㎡ (25.26%)</li> <li>기본공공기여 - 916.2㎡ × 15% = 137.43㎡ (15.00%)</li> <li>추가공공기여 - 93.97㎡ (10.26%)</li> </ul>	기본용적률 4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 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주거비율 14.28%(649.90㎡)</li> <li>- 용적률 기준</li> </ul>		
주택 건설비중	주택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li> <li>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 : 비주거 = 3,900.84㎡ (85.72%) : 649.90㎡ (14.28%)</li> <li>- 비주거비율 15% 미만(용적률 기준)</li> <li>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29.50% : 70.50% (28세대) (70세대)</li> <li>공공임대주택 : 전용 15.13㎡, 31.13㎡, 31.92㎡ 계획</li> <li>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15.13㎡, 31.13㎡, 31.92㎡ 계획</li> </ul>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li> </ul>		
주민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상 2층에 100.64㎡ 계획(북카페)</li> </ul>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기준으로 하되, 비주거시설은 지하2층~지상2층에서만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공기여계획

구분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400% 이하	법정용적률 (5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공공기여 : 대지면적의 15% 이상 - 137.43㎡ (15.00%)</li> <li>추가공공기여 : 추가용적률 연면적의 50% 이상을 부지면적으로 환산 - 91.76㎡ (10.02%)</li> <li>137.43㎡ + 91.76㎡ = 229.19㎡ (25.0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231.40㎡ (25.26%)</li> <li>기본공공기여 - 916.2㎡ × 15% = 137.43㎡ (15.00%)</li> <li>추가공공기여 - 93.97㎡ (10.2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진구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li> </ul>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마.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대상		건축 한계선	벽면 한계선	비 고
-	간선도로변	구의강변로	3m	-	• 보도형 조성(간선부 보행구간 확보)
	이면도로변	구의강변로 3길	1m	-	• 보도형 조성(이면부 보행구간 확보)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사업대상지내 구의강변로(20m)변 차량출입불허	
주차출입구	• 이면부 구의강변로 3길(6m)변 주차출입구 설치	

III. 관계도면 : 붙임 참고(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포함) 참고

V. 관계서류 열람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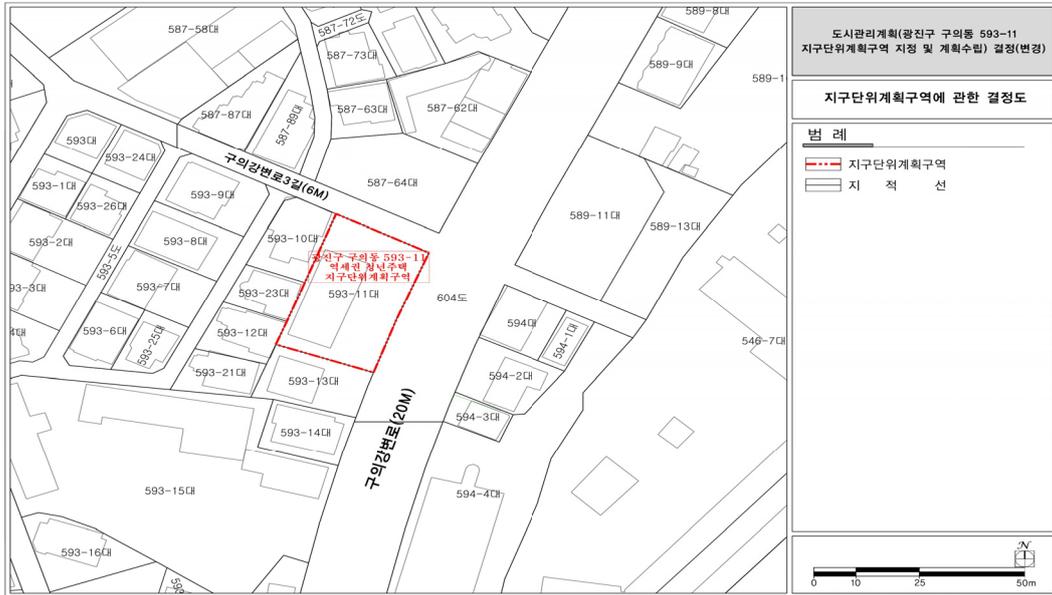
-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02-2133-6296)와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5층 도시계획과(☎02-450-768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VI.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전에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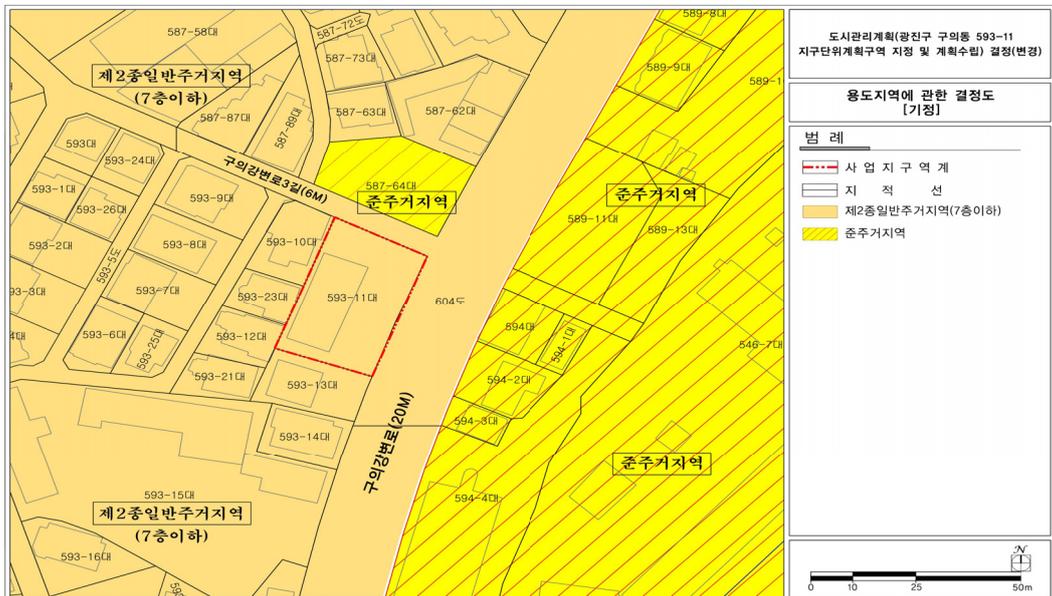
■ 첨부 : 결정도면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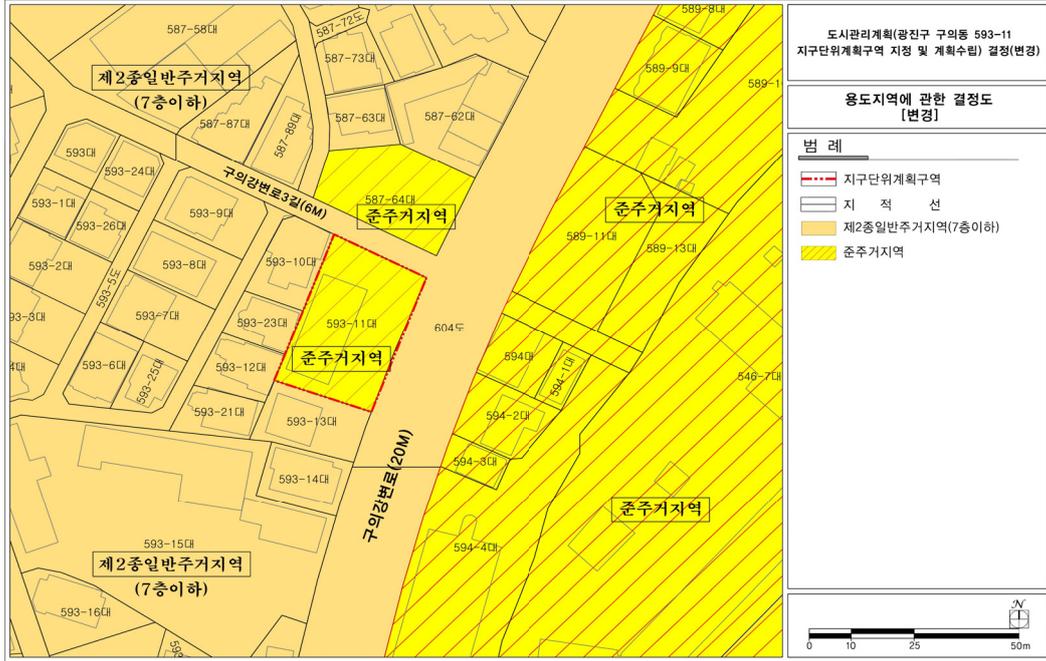


②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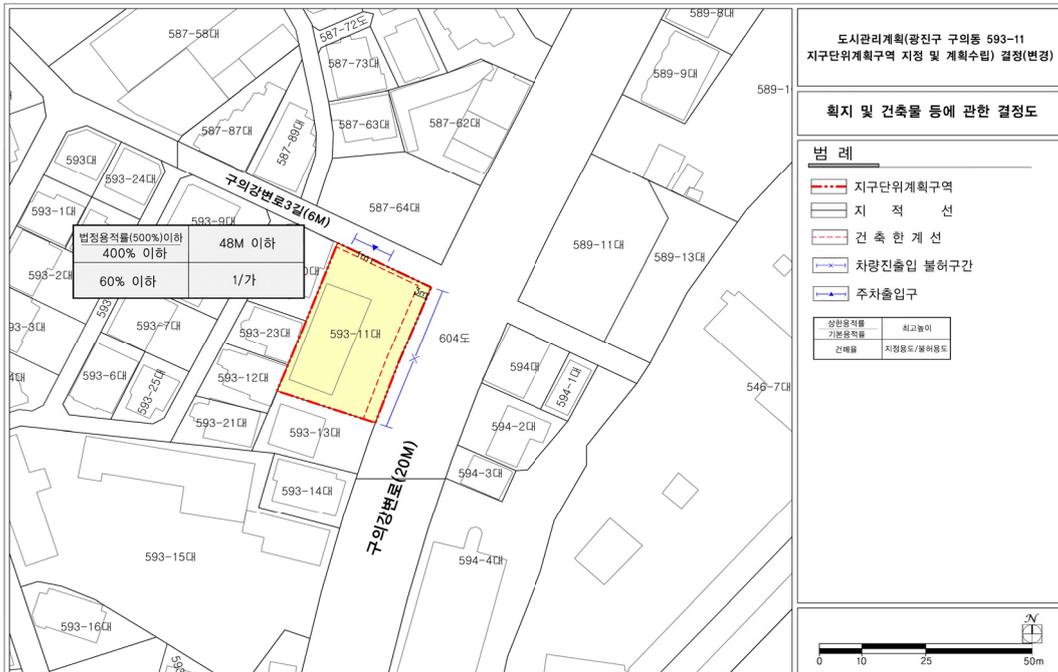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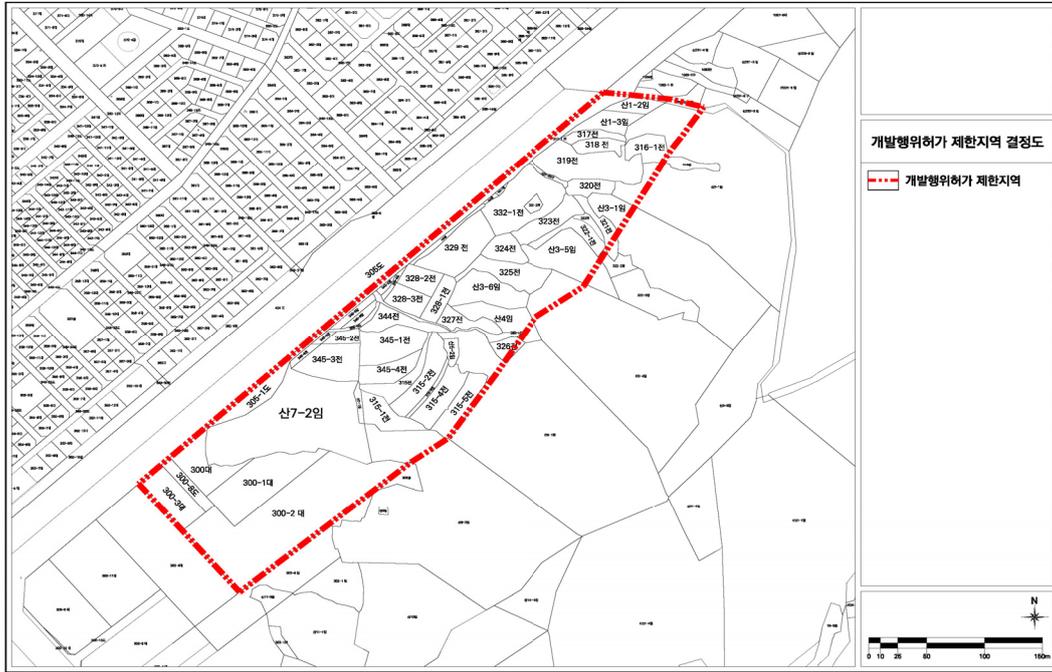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계획적인 정비·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일원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일원(면적 : 71,808㎡)
2. 제한근거 및 사유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
  - 사유 : 계획적 정비·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방지
3.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5호 및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6호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제한 예외 대상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 재해위험방지 또는 재해복구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개발행위
    - 나. 화재 및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및 보수 행위
5.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6. 관계도서 : 생략(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비치)
7. 기타사항 : 지형도면 열람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07)로 문의하시기 바람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바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형도면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2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고시

신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맞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대상 및 방법

가. 적용대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나. 적용대상의 구분 :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1)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의 경우

구분	주거	비주거
㉠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이상
㉡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10만㎡미만
㉢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1만㎡미만
㉣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미만

2) 제1호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

구분	내용
전면 대수선 <sup>1)</sup>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른 등급에서 한 등급 씩 낮추어 적용 (㉠ → ㉡, ㉡ → ㉢, ㉢ → ㉣, ㉣ → ㉤)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를 적용하며,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위에 대해 적용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전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대수선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를 적용하며, 열손실의 변동이 발생하는 부위에 대해 적용 <sup>2)</sup>

- 1) 전면 대수선: 건축물의 단열을 포함한 외피 및 설비시스템 전체를 철거 후 성능 개선을 시행하는 공사(전면 대수선과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전면 대수선으로 적용)
- 2)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열손실의 변동이 있는 부위가 포함된 실(공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에는 미적용

다.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방법

구분	내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주거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부터 제29호까지
※ 동일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	
규모	○ 주 거 : 동별 세대수의 합계
	○ 비주거 : 동별 연면적의 합계. 다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 적용대상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의 세대수 및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2. 적용기준

가. 환경성능 부문

구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녹색건축인증		㉠                      그린 1등급
		㉡                      그린 2등급
		㉢                      그린 4등급

재료 및 자원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관	공통	4급수준 이상
물순환 관리	절수형 기기 사용			3급수준 이상
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4급수준 이상
실내소음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관	주거	3급수준 이상
	화장실 급배수 소음			4급수준 이상

※ 환경성능의 세부 평가는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환경부고시)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근거서류평가 기준을 따름

나. 환경관리 부문

구 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대상	주거	비주거
미세먼지저감	저녹스보일러	관 관 관 관	개별난방방식 적용 시 저녹스보일러 설치 (중앙식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이용냉방설비 설치 시 저녹스버너 사용 제품 적용 권장)	
	기계환기장치	관 관 관 관	기준 이상의 공기여과성능 <sup>1)</sup> 을 갖는 기계환기장치 설치	
대기환경개선	저공해자동차	관 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 권장 단,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1% 이상 전기차충전기 설치 권장 단,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기숙사 “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 관	-	-
열섬효과저감	옥상녹화/쿨루프	관 관 관 관	지붕면 옥상녹화 조성 또는 쿨루프 기법 적용 권장	

1) 기계환기장치의 공기여과성능 기준 :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서 규정하는 입자포집률을 비색법·광산란적산법으로 측정하여 95% 이상 또는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 이상 확보

다. 에너지성능 부문

구 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주거	관	관 관 <sup>2)</su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주거	관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1+등급 이상 평균전용면적 60㎡ 이하: 1등급 이상
			관 관 <sup>2)</sup>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1등급 이상 평균전용면적 60㎡ 이하: 2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비주거	㉠	1+등급 이상
				㉡	1등급 이상
				㉢	2등급 이상
외피성능 향상	단열성능 평균 열관류율 (W/m <sup>2</sup> ·K)	거실의 외벽	공통	㉢	EPI <sup>3)</sup> 건축부문 1번 항목 0.8점 이상
		지붕			EPI 건축부문 2번 항목 0.8점 이상
		바닥			EPI 건축부문 3번 항목 0.8점 이상
냉·난방 에너지절감	냉·난방 열원설비 <sup>1)</sup>		공통	㉢	EPI 건축부문 5번 항목 0.9점 이상
	폐열회수 환기장치				EPI 기계부문 1번/2번 항목 0.9점 이상 (열원설비 신설 또는 교체의 경우)
전력 에너지절감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공통
	대기전력차단장치		EPI 전기부문 11번 항목 0.8점 이상		
냉방부하 저감	외부차양장치		공통	㉠ ㉡ ㉢ ㉣	EPI 전기부문 12번 항목 0.8점 이상
					남향 및 서향 거실 투광부에 외부차양 <sup>4)</sup> 설치 권장

- 1) 평가내용 중 냉·난방 열원설비와 관련된 냉난방 장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2) '17.12.15. 이후 시행중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하는 주거용(㉡, ㉢)의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3) 에너지성능지표(EPI): EPI의 점수 및 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 4) 외부차양 : 고정형 차양으로 외부 수직 또는 수평 차양, 가동형 차양으로 외부 또는 유리 사이 차양을 말한다.

라. 에너지 관리 부문

구 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주거	비주거
에너지 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	㉡ + 데이터 분석기능	㉢+BEMS 설치
		㉡	㉢ +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sup>1)</sup> 모니터링 기능	㉣ + 5종 이상 에너지 용도별 <sup>2)</sup> 모니터링 기능
		㉢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데이터 분석 기능

- 1) 에너지원별 :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전기, 가스, 지역냉난방, 수도 등)
- 2) 5종 이상 에너지 용도별 구분 기준 : [필수] 난방, 냉방, 급탕 [선택] 공조용 팬, 펌프(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 전등, 전열, 엘리베이터 중 선택

마. 신·재생에너지 부문

※ 민간 건축물 의무설치비율(%) 산정방식  
 = 규모별 설치비율(%) - 대체비율(%)  
 대체비율은 규모별 설치비율의 최대 50% 미만까지 인정

1) 연도별 설치비율(%)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공공건축물	15%	18%	21%	24%	27%	30%	-	-	-	
민간건축물	주거	2%	3%	4%	5%	6%	7%	8%	9%	10%
	비주거	7%	7%	9%	9%	11%	11%	12%	12%	14%

2) 규모별 설치비율(%)

구 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주거용	비주거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frac{\text{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1}{\text{신·재생에너지 생산량}} \times 100 = \frac{\text{예상 에너지사용량}}{\text{신·재생에너지 생산량}} \times 100$	㉠	연도별 설치비율	연도별 설치비율
		㉡	연도별 설치비율 -0.5%포인트	연도별 설치비율 -1.0%포인트
		㉢	연도별 설치비율 -1.0%포인트	연도별 설치비율 -2.0%포인트
	㉣	자율	자율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설치	㉠ ㉡ ㉢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설치 용량(kWp) = 대지면적(㎡) × 0.01(kWp/㎡)	

1) 세부 산출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을 따름  
 (다만, 공동주택은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을 230kWh/m2y으로 반영)  
 ※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설치 시 추후 설비용량 증설을 대비한 사전배관 및 인버터 등 계획 반영

3) 대체비율

구 분	내 용			
성능 대체비율	1) 성능대체비율 (단위: kWh/㎡·y)			
	※ 주거: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 10 당 대체비율 0.25% 포인트씩 대체 인정			
	※ 비주거: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 15 당 대체비율 0.5% 포인트씩 대체 인정			
	주 거		비주거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	대체비율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	대체비율
	10 이상	0.25%	15 이상	0.50%
20 이상	0.50%	30 이상	1.00%	
30 이상	0.75%	45 이상	1.50%	
40 이상	1.00%	60 이상	2.00%	
·	·	·	·	
·	·	·	·	

성능 대체비율	2)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 산정(단위 : kWh/m <sup>2</sup> ·y) ※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 = 규모별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값(a) - 대상건축물의 1차에너지소요량(b)						
	구 분	주거			비주거		
		개	단	단	개	단	단
	규모별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값(a)	120*/150**	150*/190**		200	260	320
대상건축물 1차에너지 소요량(b)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결과 혹은 1차에너지소요량 분석결과						
*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 평균전용면적 60㎡ 이하							
대지외부 대체비율	1) 설치형태 : 신설(기존 설치된 신재생은 미인정) 2) 설치장소 : 대상건물 대지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 3) 제출서류 : 신재생설치용량 및 신재생적용비용계산서, 설치 전·후 사진 및 도면, 설치관련 계약서(협정서) 및 활용계획서, 납품확인서 등 증빙서류						

3.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인센티브

1)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기준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비율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녹색건축 인증 등급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9%
1등급		6%	3%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등에 따른 완화기준에 따른 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ZEB 1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15%
ZEB 2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14%
ZEB 3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13%
ZEB 4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12%
ZEB 5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11%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20%미만인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

- 2)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기준  
 - 건축물의 신축 시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최대완화비율
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20%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센티브

- 1) 신축(증·개축 포함)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녹색건축 인증 등급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이상		15%	10%
2등급		10%	5%

-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녹색건축 인증 등급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이상		10%	7%
1등급		7%	3%

※ 위의 각 인센티브의 구체적 사항은 관련법에 따름

4. 신청 서식 : 별지 서식에 따름

5. 관계법령 :

-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
- 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 다.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 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제8조
- 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바.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 제16조, 제17조
- 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 제7조
- 아.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2호, 2017. 9. 28.)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기초공사 전에 전면 재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고시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1]

**냉난방 장치 설치기준(제2호다목 관련)**

1. 적용대상 및 기준

가. 대상 : **㉠**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적용기준 : EPI 기계부문 1~2번 항목 0.9점 이상 (신설 또는 교체 시)

적용대상		적용수준	주거 ㉠ 급	비주거 ㉠ 급
EPI 기계부문 1번(난방)	개별난방방식		1.0점 이상	0.9점 이상
	그 외		0.9점 이상	0.9점 이상
EPI 기계부문 2번(냉방)			0.9점 이상	0.9점 이상

2. 적용의 예외

구 분	내 용	적용사항
1	전체 난방 용량의 80% 이상을 축열식 전기난방,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 난방,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으로 채택한 경우	EPI 기계부문 1번 항목 평가 제외
2	전체 냉방 용량의 80% 이상을 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단, 가스히트펌프 방식은 제외), 지역냉방 또는 소형열병합 냉방으로 채택한 경우	EPI 기계부문 2번 항목 평가 제외
3	입주자 공사분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시 까지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신설하거나 교체하지 않는 경우	EPI 기계부문 1번 또는 2번 항목 평가 제외

[별표 2]

**에너지성능지표(EPI-Energy Performance Index)**

(제2호다목 관련)

평가내용		배점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건축부분	1.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W/m <sup>2</sup> ·K) (창 및 문을 포함)	비주거	0.490미만	0.490~0.560미만	0.560~0.620미만	0.620~0.680미만	0.680~0.740미만	
		주거	0.340미만	0.340~0.380미만	0.380~0.420미만	0.420~0.460미만	0.460~0.500미만	
	2.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W/m <sup>2</sup> ·K)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		0.090미만	0.090~0.100미만	0.100~0.110미만	0.110~0.130미만	0.130~0.150미만	
	3. 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W/m <sup>2</sup> ·K)		0.120미만	0.120~0.130미만	0.130~0.150미만	0.150~0.170미만	0.170~0.210미만	
5. 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 (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m <sup>3</sup> /h·m <sup>2</sup> ))		1등급 (1m <sup>3</sup> /h·m <sup>2</sup> 미만)	2등급 (1~2m <sup>3</sup> /h·m <sup>2</sup> 미만)	3등급 (2~3m <sup>3</sup> /h·m <sup>2</sup> 미만)	4등급 (3~4m <sup>3</sup> /h·m <sup>2</sup> 미만)	5등급 (4~5m <sup>3</sup> /h·m <sup>2</sup> 미만)		
기계부분	1. 난방설비 (효율%)	기름 보일러		93이상	90~93미만	87~90미만	84~87미만	84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90이상	86~90미만	84~86미만	82~84미만	82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 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난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2. 냉방설비	원심식(성적계수, COP)		5.18 이상	4.51~5.18미만	3.96~4.51미만	3.52~3.96미만	3.52미만
		흡수식 (성적계수, COP)	① 1중효용	0.75 이상	0.73~0.75미만	0.7~0.73미만	0.65~0.7미만	0.65미만
			② 2중효용	1.2 이상	1.1~1.2미만	1.0~1.1미만	0.9~1.0미만	0.9미만
			③ 3중효용					
	④ 냉온수기							
	기타 냉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6.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전체 환기소요량의 60% 이상 적용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이상, 난방시 15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일 경우 배점)						
전기부분	11.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 비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90 % 이상	80%이상~90%	70%이상~80%	60%이상~70%	50%이상~60%	
	12.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80% 이상	70%이상~80%	60%이상~70%	50%이상~60%	40%이상~50%	

[별지 서식 1호] 서울형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

**서울형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

○ 사업 개요

사업명	000 신축공사		
건축주	00건설(주) 대표이사 000		
대지위치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대지면적	000.00(m <sup>2</sup> )	냉난방면적	000.00(m <sup>2</sup> )
건축면적	000.00(m <sup>2</sup> )	건 폐 율	000.00(%)
연 면 적	000.00(m <sup>2</sup> )	용 적 륜	000.00(%)
건물규모	지하 00층, 지상 00층	최고높이	000(m)
용 도	00 시설	건물동수	00(동)
용도별면적	000시설 : 000.00m <sup>2</sup> , 000시설 : 000.00m <sup>2</sup>		
추진경위	- 2018.00.00. :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 신청 구분

구 분	적 용 여 부 (■ 표시)
용도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비주거
등급	<input type="checkbox"/> Ⅰ <input type="checkbox"/> Ⅱ <input type="checkbox"/> Ⅲ <input type="checkbox"/> Ⅳ
행위 (별첨1)	<input type="checkbox"/> 신축, 별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input type="checkbox"/> 전면 대수선 <input type="checkbox"/>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input type="checkbox"/> 기타
선택 사항	에너지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신재생에너지 <input type="checkbox"/> 성능대체 <input type="checkbox"/> 외부대체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건축기준 완화	<input type="checkbox"/> 용적률 <input type="checkbox"/> 높이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성능 적용 수준

항 목		적용 수준		근거	
		적용기준	설계내용		
환경	성능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그린3등급	
		유해물질 저감 자재 (등급)	4급 (5개 이상 사용)	3급 (11개 사용)	
		절수형 기기 (등급)	3급 (4점 이상)	3급 (4점)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등급)	4급 (2점 이상)	3급 (2.1점)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등급)	3급 (RC180mm이상)	3급 (RC200mm)	
		화장실 급배수 소음 (등급)	4급 (4점 이상)	3급 (5점)	
	관리	저녹스보일러 (적용)	적용	적용	
		기계환기장치 (성능)	비색법·광산란적산법 95% 이상 또는 계수법 60% 이상	비색법 96.5%	
		저공해자동차 (비율)	주차면 5% 이상 콘센트 2% 이상	주차면 5.3% 콘센트 2.0%	
		옥상녹화/쿨루프 (적용)	적용권장	옥상녹화 30% 적용	
에너지	성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2등급 (320kWh/m <sup>2</sup> 이하)	2등급 (280kWh/m <sup>2</sup> )	
		외피 평균 단열성능*	외벽 (배점)	0.8점 (0.620W/m <sup>2</sup> ·K미만)	0.9점 (0.500W/m <sup>2</sup> ·K)
			지붕 (배점)	0.8점 (0.110W/m <sup>2</sup> ·K미만)	0.9점 (0.095W/m <sup>2</sup> ·K)
			바닥 (배점)	0.8점 (0.150W/m <sup>2</sup> ·K미만)	0.8점 (0.140W/m <sup>2</sup> ·K)
		기밀성능*	창 및 문 (배점)	0.9점 (2등급)	0.9점 (2등급)
		냉·난방 열원설비*	난방 (배점)	0.9점	1.0점 (고효율인증제품)
			냉방 (배점)	0.9점	0.9점 (1등급제품)
			폐열회수 환기장치* (배점)	적용 (60% 이상)	적용 (80%)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배점)	0.8점 (70% 이상)	0.9점 (83%)
			대기전력차단장치* (배점)	0.8점 (60% 이상)	0.8점 (65%)
		외부차양장치 (비율)	남향 및 서향 설치권장	남향 5% 설치	
관리	에너지모니터링 및 분석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신재생 에너지	원별 설치 규모	태양광 (kW)	의무설치량 10.2 kWp	10.5kW	
		태양열 (㎡)	-		
		지열 (kW)	-		
		연료전지 (kW)	-		
		집광채광 (㎡)	-		
	신재생에너지공급률 (%)	5%	5%		
	외부설치 (%)	1%	1%		

※ [ ] 이외의 건축물 : 에너지 절감 기술 중 \* 사항은 '적용기준' 을 법적기준으로 작성

○ 건축기준 완화비용

항 목	적용기준	완화비용		근거
		용적율	높이	
녹색건축물 활성화 대상 완화기준	(3~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10~15%)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구 분	건축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설 계 자	(주)00사사무소 (인)	(주)000사무소 (인)	(주)00종합기술 (인)
	참여기술자 0 0 0	참여기술자 0 0 0	참여기술자 0 0 0
	02-0000-0000	02-0000-0000	02-0000-0000
담당 공무원	홍 길 동		☎ 02-0000-0000

○ 검토서 체크리스트(인·허가단계)

항목		근거서류	검토사항	
환경성능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예비)인증서 혹은 적용예정 확인서	•인증서 등급의 확인	
	재료 및 자원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녹색건축인증 신축 비주거용/주거용 3.4항목 관련서류(자재별 인증서, 적용부위 도면 및 사용계획서)	•산출기준 4급 이상 확인
	물순환관리	절수형 기기 사용	•녹색건축인증 신축 비주거용/주거용 4.3항목 관련서류(환경표지인증 대상 제품 인증서 및 서류, 해당도면)	•산출기준 3급 이상 확인
	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녹색건축인증 신축 비주거용/주거용 7.1항목 관련서류(자재별 인증서, 적용부위 도면 및 사용계획서)	•비주거 용도별 산출기준, 주거 4급 이상 확인
	실내소음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녹색건축인증 주거용 7.7항목 관련서류(차음구조 인정서 및 시험성적서, 해당도면)	•산출기준 3급 이상 확인
화장실 급배수 소음		•녹색건축인증 주거용 7.9항목 관련서류(해당 도면 및 시방서, 시험성적서 등)	•산출기준 4급 이상 확인	
환경관리	미세먼지저감	저녹스 보일러	•장비일람표(대상 장비 비교란에 '저녹스 보일러 사용' 등을 표기)	•해당 도서에 기입 확인
		기계환기장치	•관련도면(장비일람표)	•기계환기장치에 설치된 공기여과기(필터)의 입자포집률 측정기준 및 효율 만족여부 확인
	대기환경개선	저공해 자동차	•관련도면(주차장 평면도, 주차계획도, 전열설비 배선도, 전기차 충전 설비 상세도 등)	•저공해자동차 주차공간 및 전기차 충전설비(콘센트 등) 설치 여부 확인
	열섬효과저감	옥상녹화/쿨루프	•관련도면(조경구적도, 생태면적구적도, 옥상층평면도, 단면도 등)	•옥상녹화 또는 쿨루프 조성 여부 확인

에너지 성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혹은 적용예정확인서</li> <li>•주거일 경우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 성능 계획서 또는 절약계획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증서 등급 및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확인</li> </ul>	
	외피 성능 향상	평균 열관류율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1번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점 0.8점 이상 확인</li> </ul>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2번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점 0.8점 이상 확인</li> </ul>
			바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3번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점 0.8점 이상 확인</li> </ul>
	냉·난방 에너지 절감	기밀성	창 및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5번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점 0.9점 이상 확인</li> </ul>
			냉·난방 열원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1, 2번 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점 0.9점 이상 확인</li> </ul>
	전력 에너지 절감	폐열회수 환기장치	LED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성능지표 전기부문 11번 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점 0.8점 이상 확인</li> </ul>
			대기전력차단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성능지표 전기부문 12번 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점 0.8점 이상 확인</li> </ul>
	냉방 부하 저감	외부차양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차양 상세도 및 설치 영역 구적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차양의 설치여부 확인</li> </ul>	
	에너지 관리	에너지모니터링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 설치 도면 및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충족(장비설치) 여부 확인</li> <li>•BEMS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2 만족여부 확인</li> </ul>	
신재생 에너지	원별 설치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재생 설치 도면, 계산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재생 설치용량 확인</li> <li>•태양광 의무 설치량 만족여부 확인</li> </ul>		
	신재생에너지공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비율계산서</li> <li>•설계개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비율 확인</li> <li>•용도, 연면적 확인</li> </ul>		

○ 검토서 체크리스트(건축심의단계) : 건축기준 완화 적용 건축물일 경우

항목	근거서류	검토사항
녹색건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색건축(예비)인증서 혹은 적용예정확인서와 가체점표(예시 참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증 등급의 확인</li> </ul>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혹은 적용예정확인서와 적용요소계획(예시 참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증 등급의 확인</li> </ul>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이상) (예비)인증서 혹은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도면 및 계산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증 등급의 확인</li> </ul>

[별지 서식 2호] 서울형 녹색건축 이행 확인서(제4호 관련)

### 서울형 녹색건축 이행 확인서

○ 사업 개요

사업명	000 신축공사	인·허가일자	2018. . (제 호)
건축주	0000(주) 대표이사 000		
대지위치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대지면적	000.00(m <sup>2</sup> )	냉난방면적	000.00(m <sup>2</sup> )
건축면적	000.00(m <sup>2</sup> )	건 폐 율	000.00(%)
연 면 적	000.00(m <sup>2</sup> )	용 적 률	000.00(%)
건물규모	지하 00층, 지상 00층	최고높이	000(m)
용 도	00 시설	건물동수	00(동)
시 공 자	00건설(주)	착공일	2020.00.00
추진경위	- 2018.00.00. : 건축허가 - 2019.00.00. : 허가변경	건축허가시 적용기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000호
제출용도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비주거	
건물등급	<input type="checkbox"/> 개 <input type="checkbox"/> 단 <input type="checkbox"/> 단 <input type="checkbox"/> 단 <input type="checkbox"/> 단	<input type="checkbox"/> 단 <input type="checkbox"/> 단	<input type="checkbox"/> 단
행위	<input type="checkbox"/> 신축, 별동 증축, 개축, 재축, 이전	<input type="checkbox"/> 전면 대수선	<input type="checkbox"/>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input type="checkbox"/> 기타
건축기준 완화	<input type="checkbox"/> 용적률 <input type="checkbox"/> 높이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작성책임자 (시공사)	소속:	직위:	성명: (인)
최종확인자 (감리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이행 확인사항

항 목		적용현황	확인결과
환경	성능	녹색건축인증	그린3등급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유해물질 저감 자재	3급(11개 사용)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절수형 기기	3급(4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 자재	3급(2.1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3급(RC200mm)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화장실 급배수 소음	3급(5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환경	관리	저녹스보일러		적용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기계환기장치	비색법	96.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계수법	-	
			기타	-	
		저공해자동차	주차면	5.3%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충전시설	2.0%	
옥상녹화/쿨루프		옥상녹화 30%	<input type="checkbox"/> 적용 <input type="checkbox"/> 미적용		
에너지	성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2등급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외피 평균 단열성능	외벽	0.9점(0.500W/m <sup>2</sup> K)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지붕	0.9점(0.095W/m <sup>2</sup> K)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바닥	0.8점(0.140W/m <sup>2</sup> K)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기밀성능	창 및 문	0.9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냉·난방 열원설비	난방	1.0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냉방	0.9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폐열회수 환기장치		적용(80%)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0.9점(83%)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대기전력차단장치		0.8점(6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외부차양장치		남향 5% 설치	<input type="checkbox"/> 적용 <input type="checkbox"/> 미적용	
관리	에너지모니터링 및 분석		세대별·원별 모니터링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의무설치 (kW)		10.5kW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태양열 (m <sup>2</sup> )		-	-	
	지열 (kW)		175.8kW	-	
	연료전지 (kW)		-	-	
	집광채광 (m <sup>2</sup> )		-	-	
	신재생에너지공급률 (%)		5.1%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71호

**공영 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후 미납차량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18.10월분)
-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 4. 공고기간 : 2019. 1.16. ~ 2019. 1.30.(15일간)
-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나.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7일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 공시 송달대상자명단

연번	고시번호	차량번호	차종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간	출차일자	출차시간	부과금액	기산금	주차요금	소유자	주소	우편번호	민중시유
	23건									합계 : 197,800원						
1	20207268	01H6270	NEW EF쏘나타	신설동	10:53	2018-10-26	08:07	2018-10-26	19:00	3,600	0	3,600	인현순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01643	수취인불명
2	20207206	02부6886	스포르지	한강연역	01:00	2018-10-13	21:06	2018-10-13	22:06	3,000	0	3,000	모은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림로	21940	수취인불명
3	20207207	04부4098	모닝	서당노외	08:20	2018-10-13	18:34	2018-10-14	02:54	12,500	0	12,500	곽미경	경기도 화성시 봉곡읍 상리3길	18304	폐문부재
4	20207199	05H0370	아반떼(AVANTE)	동대문	01:06	2018-10-12	21:02	2018-10-12	22:08	5,600	0	5,600	정인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10254	폐문부재
5	20207212	06H1417	세단투	계화역	00:00	2018-10-13	18:43	2018-10-14	22:29	16,700	0	16,700	조상삼	울산광역시 남구 신북로	44607	폐문부재
6	20207333	06H6287	산테페(SANTAFE)	구로디지털단지역	09:17	2018-10-16	17:09	2018-10-17	02:26	16,800	0	16,800	홍성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03391	폐문부재
7	20207166	11수4956	모닝	한강연역	02:13	2018-10-06	10:26	2018-10-06	12:39	3,300	0	3,300	이은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06106	폐문부재
8	20207377	13H9623	포르테	신대방역	01:24	2018-10-31	09:03	2018-10-31	10:27	2,500	0	2,500	이세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10길	08866	폐문부재
9	20207114	20H2770	BMW 118d	북정역	00:00	2018-10-01	18:32	2018-10-02	06:20	13,000	0	13,000	김다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07278	수취인불명
10	20207130	22독6746	아반떼 (AVANTE)	한강연역	00:16	2018-10-03	12:19	2018-10-03	12:35	1,000	0	1,000	문기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19길	55121	폐문부재
11	20207236	23부0682	아반떼(AVANTE)	북정역	03:01	2018-10-06	16:16	2018-10-06	19:17	3,700	0	3,700	이정무	경기도 장남시 수정구 탄리로	13287	폐문부재
12	20207249	27H8297	쏘나타(SONATA) 하이브리드	서당노외	02:59	2018-10-20	17:45	2018-10-20	20:44	9,000	0	9,000	조영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08862	폐문부재
13	20207332	35H1841	아반떼 (AVANTE)	수락연역	10:32	2018-10-15	13:14	2018-10-15	23:46	12,700	0	12,700	조사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1536	이시불명
14	20207184	38부9036	BMW X5 3.0i	신설동	10:00	2018-10-08	08:59	2018-10-08	19:00	18,000	0	18,000	장흥기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로	18238	폐문부재
15	20207271	41부2089	A6 35 TDI	동대문	00:49	2018-10-26	22:50	2018-10-26	23:39	4,000	0	4,000	김혜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흥안대로	14121	폐문부재
16	20207218	46수7707	K7	서당노외	01:07	2018-10-16	16:53	2018-10-16	18:00	5,600	0	5,600	TANG HAO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신로	04069	수취인불명
17	20207171	64H9641	투싼(TUCSON)	한강연역	01:13	2018-10-06	12:27	2018-10-06	13:40	3,700	0	3,700	정종규	울산광역시 중구 장개2길	44546	폐문부재
18	20207237	64H9678	쏘나타 (SONATA)	가양라이플	00:21	2018-10-08	11:20	2018-10-08	11:41	500	0	500	그정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07628	수취인불명
19	20207335	69H9940	산테페(SANTAFE)	구로디지털단지역	03:04	2018-10-20	18:11	2018-10-20	21:15	5,500	0	5,500	문학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03469	폐문부재
20	20207278	82H2730	포터II비동탑차 (PORTER II)	계화연역	03:44	2018-10-28	13:03	2018-10-28	16:47	4,500	0	4,500	김종석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10129	폐문부재
21	20207374	82H9715	라보롱기코	신대방역	00:14	2018-10-30	18:41	2018-10-30	18:55	200	0	200	영관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0249	폐문부재
22	20207156	89H5026	스타렉스(STAREX)	서당노외	09:22	2018-10-05	12:46	2018-10-05	22:08	28,200	0	28,200	안형도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22804	폐문부재
23	20207160	89H5026	스타렉스(STAREX)	서당노외	08:05	2018-10-06	12:41	2018-10-06	20:46	24,200	0	24,200	안형도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22804	폐문부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72호

**자동차등록번호판 예비 발급대행자 선정결과 공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비 발급대행자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선정결과

사업구역	예비 발급대행자	차순위 예비 발급대행자
강남	이창기업(주)	-
강서	오토플러스(주)	㈜오토클릭서비스
강북	한국비주얼(주)	㈜동원씨앤드에스

2. 기타 참고사항

- 예비 발급대행자 이행사항 및 차순위 예비 발급대행자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2133-2342)로 문의 바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성북구고시 제2015-108호(2015.7.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670호(2015.9.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62호(2015.11.19.)로 실시계획 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2호(2016.6.16.)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성북구 정릉동 544-1 일대(북악산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

- 다. 사업의 규모 : 폭 9.77m(2차로), 연장 60m, 철근콘크리트 교량(DB 24)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고시일 ~ 2018.12.26.
- 바.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02-2133-196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9-7	(사)한국아시아우호재단 (대표:최재성)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11,10층(삼성동,하남빌딩)	o. 아시아 도서출판,교육조사연구, 연수 등 사업	100 (현금)	전국	2019.1.15.~2019.12.31.
						2019.1.15.~2020.12.31.
2019-8	(재)삼성꿈장학재단 (대표:노성태)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하얏타워 20층	o. 교육소외계층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금 지원	20 (현금)	전국	2019.1.15.~2019.12.26.
						2019.12.27.~2021.12.26.
2019-9	(사협)지파운데이션 (대표:박충관)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5길 10,서일빌딩2층	o. 국내취약계층 및 저개발국가 국제개발협력 지원 사업	900 (현금및물품)	전국	2019.1.15.~2019.12.31.
						2019.1.15.~2020.12.31.
2019-10	(사)오퍼레이션스마일코리아 (대표:이종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11,1102호(인사동,대일빌딩)	o. 전세계 안면기형 및 신체장애 어린이 무료수술지원	400 (현금및물품)	전국	2019.1.15.~2020.1.14.
						2019.1.15.~2021.1.14.
2019-11	웰인터네셔널 (대표:심호식)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1255호	o. 개발도상국 수혜지역 및 국내외 소외 지역사회 지원 사업	500 (현금및물품)	전국	2019.1.15.~2019.12.31.
						2019.1.15.~2019.12.31.

2019-12	(사)한국주니어사관연맹 (대표:홍두승)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길 25(사직동)	o. 주니어ROTC 청소년들의 교육진흥사업 지원	200 (현금및물품)	전국	2019.1.15.~ 2019.12.31.
						2019.1.15.~ 2020.12.31.
2019-13	(주)코밴 (대표:김상준)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6길 10	o. 불우이웃돕기 등 전국 복지시설 분배 지원	1,000 (현금및물품)	전국	2019.1.15.~ 2019.12.31.
						2019.1.15.~ 2019.12.31.
2019-14	(사)동물권행동카라 (대표:임순례)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서교동)	o. 동물보호사업	569 (현금및물품)	전국	2019.1.15.~ 2019.12.31.
						2019.1.15.~ 2020.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8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강상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247번길 21-7, *동 ***호 (효성동, 삼미하우스)	일시: 2018-11-14 14:40 장소: 목동교 동측램프 내용: 제한 총중량 4.05톤 초과	처분일: 2018. 12. 26. 과태료: 25만 원 납기일: 2019. 2. 28.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서진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8길 17,*** (봉천동)	일시: 2018-09-07 09:57 장소: 목동교 동측램프 내용: 제한 총중량 4.0톤 초과	처분일: 2018. 10.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8. 12. 31.
한인수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 119, ***동 ****호 (가좌동, 인천가좌 두산위브트레지움2단지)	일시: 2018-09-14 04:04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38길 내용: 제한 폭 0.26미터 초과	처분일: 2018. 10.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8. 12. 31.
김종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58, ***호 (계산동)	일시: 2018-09-17 10:16 장소: 올림픽대로 내용: 제한 축하중 1.3톤 초과, 2회	처분일: 2018. 10. 26. 과태료: 70만 원 납기일: 2018. 12. 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 2019. 2. 28.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2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지 공시승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심혁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호암길 * (2층)	일시 : 2018-11-01 09:47 장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양재대로 내용 : 차량의 길이 제한 2m 초과	과태료:30만원
유상현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 **길** 서울아파트 *동***호(금곡동)	일시 : 2018-11-21 11:18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언주로 내용 : 차량의 총중량 제한 4.15톤 초과	과태료:5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문의처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040-0322, 팩스번호 :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4호

**시유특허권 처분 공고**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통해 발굴된 시유특허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해외특허권)의 사업화로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유 시유특허권에 대한 실시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시유특허권의 정의

-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입니다.

2. 처분대상 시유특허권(처분종류 : 통상실시권 허락)

가. 국내 시유특허권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	교량 무인 점검장치	10-1934490	통상실시권 허락	2018-12-26
특허	2	방수 겹이음 시공 공법 및 이를 위한 방수 겹이음 시공장치	10-1929499	통상실시권 허락	2018-12-10
특허	3	분할식 라이닝폼을 이용한 아치형 터널의 시공방법	10-1906546	통상실시권 허락	2018-10-02
특허	4	변형 가능한 환자 이송 장비	10-1889068	통상실시권 허락	2018-08-09
특허	5	비상 탈출 장치	10-1881455	통상실시권 허락	2018-07-18
특허	6	맨홀 덮개 개폐 장치	10-1865366	통상실시권 허락	2018-05-31
특허	7	고내구성 급경화 상온식 균열 보수제 제조방법 시공방법	10-1864547	통상실시권 허락	2018-05-29
특허	8	고내구성 급경화 상온식 균열 보수제 제조방법	10-1864548	통상실시권 허락	2018-05-29
특허	9	드레인 밸브	10-1861844	통상실시권 허락	2018-05-21
특허	10	프리스트레스 도입형 강재 및 이의 제작방법	10-1798416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10
특허	11	밸브 상태 확인장치	10-1847732	통상실시권 허락	2018-04-04
특허	12	비산측정용 고효율 시료포집 장치	10-1824130	통상실시권 허락	2018-01-25
특허	13	하수관로 물 돌리기 시스템	10-1814880	통상실시권 허락	2017-12-27
특허	14	칼슘제를 이용한 수돗물 처리 시스템 및 방법	10-1805350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29
특허	15	소방용 스탠드 파이프	10-1796386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03
특허	16	유지관리가 용이한 프리캐스트 신축이음장치 및 시공방법	10-1785624	통상실시권 허락	2017-09-29
특허	17	하수슬러지 소각재로부터 인(P)의 회수 방법	10-1785242	통상실시권 허락	2017-09-28
특허	18	배출수지 순차제어 시스템 및 방법	10-1783095	통상실시권 허락	2017-09-22

특허	19	가로등 부하선로 측정장치 및 그 방법	10-1772823	통상실시권 허락	2017-08-23
특허	20	도로포장용 차열성 도로조성물	10-1754943	통상실시권 허락	2017-07-12
특허	21	역류 방지용 수도 미터기(서울시 지역 제한)	10-1739892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19
특허	22	환자 이송용 들것	10-1714316	통상실시권 허락	2017-03-02
특허	23	조류퇴치장치	10-1743707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30
특허	24	다기능 안전벨트	10-1723634	통상실시권 허락	2017-03-30
특허	25	심폐소생술 실습장치 (2)	10-1705745	통상실시권 허락	2017-02-06
특허	26	복합 프로파일 및 이를 구비한 지주구조물	10-1683630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01
특허	27	출동정보전달 시스템	10-1567241	통상실시권 허락	2015-11-02
특허	28	등기구	10-1696149	통상실시권 허락	2017-01-06
특허	29	중온화 펠렛형 아스팔트용 박리방지제 조성물 및 제조 방법, 이를 이용한 수분저항성이 우수한 중온화 아스팔트 혼합물	10-1687114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09
특허	30	분할식 라이닝폼을 이용한 아치형 터널의 시공방법	10-1687308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12
특허	31	다기능 안전면체	10-1692524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28
특허	32	다기능 구조낭	10-1674165	통상실시권 허락	2016-11-02
특허	33	물 흐름 감지형 제수밸브	10-1643173	통상실시권 허락	2016-07-21
특허	34	이동자 흡식 부유물 제거장치	10-1642443	통상실시권 허락	2016-07-19
특허	35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출동 지령 전달 시스템	10-1614510	통상실시권 허락	2016-04-15
특허	36	심폐소생술 실습장치(1)	10-1610289	통상실시권 허락	2016-04-01
특허	37	인터페이스 호환성을 가진 모바일 웹 페이지 생성 장치 및 제공 시스템	10-1592496	통상실시권 허락	2016-02-01
특허	38	흙 콘크리트 조성물(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575791	통상실시권 허락	2015-12-02
특허	39	무장애 스마트 통신 장치 및 그 방법	10-1574201	통상실시권 허락	2015-11-27
특허	40	호흡면체 직결 공기정화용 어댑터	10-1551675	통상실시권 허락	2015-09-03
특허	41	물 유출 지연 장치	10-1551672	통상실시권 허락	2015-09-03
특허	42	배수지용 수돗물 재담수 시스템	10-1543736	통상실시권 허락	2015-08-05
특허	43	흉부 압박 시스템	10-1532418	통상실시권 허락	2015-06-23
특허	44	야간 관측이 용이한 하천 수위 측정장치	10-1519592	통상실시권 허락	2015-05-06
특허	45	플라스터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514809	통상실시권 허락	2015-04-17
특허	46	가교형 반침 구조물의 시공방법	10-1511265	통상실시권 허락	2015-04-06
특허	47	정수 슬러지를 재활용한 다공성 조습보드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다공성 조습보드의 제조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478422	통상실시권 허락	2014-12-24
특허	48	중온 저소음 아스팔트용 첨가제 및 첨가제가 포함된 중온 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	10-1424759	통상실시권 허락	2014-07-23
특허	49	정수처리 공정에서 염소투입량 결정방법	10-1400950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22
특허	50	용적확장형 캐리어	10-1400949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22
특허	51	장거리방수용 방수포	10-1395664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52	구명장치	10-1395669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53	토석류 저감 장치	10-1395667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54	통합건설 정보관리 시스템	10-1395665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55	고분자를 이용하여 알갱이 형태로 가공한 안료 및 이를 포함하는 장수명 칼라 아스팔트 조성물(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392414	통상실시권 허락	2014-04-29
특허	56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및 이동단말기	10-1345266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19
특허	57	방화커튼장치	10-1343047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12
특허	58	내식성이 향상되는 수도시설용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의 용접부 후처리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309980	통상실시권 허락	2013-09-11
특허	59	휴대용 검사장치	10-1279624	통상실시권 허락	2013-06-21
특허	60	굴착방지 가변형 제수밸브	10-1279625	통상실시권 허락	2013-06-21
특허	61	국지도로용 광방향성 반사블록을 구비한 BUG제어 LED조명등(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259539	통상실시권 허락	2013-04-24
특허	62	수용액 내 암모니아성질소의 측정방법	10-1244614	통상실시권 허락	2013-03-11
특허	63	요동방지 호스지지체	10-1234541	통상실시권 허락	2013-02-13
특허	64	투수포장 구조체	10-1225072	통상실시권 허락	2013-01-16
특허	65	오거장비용 가림막 자동화 장치(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224693	통상실시권 허락	2013-01-15
특허	66	수도관용 동결 해빙못 시공구조	10-1205468	통상실시권 허락	2012-11-21
특허	67	유지보수 발판이 구비된 도로 전광표시	10-1197458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30
특허	68	DMP 개질아스팔트 및 그 제조방법	10-1195201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22
특허	69	급수관 구경확대를 위한 새들붙이 분수전 무단수 차단 장치	10-1195199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22
특허	70	상수도용 자석 부착형 스트레이너	10-1195200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22
특허	71	DMP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10-1188092	통상실시권 허락	2012-09-26
특허	72	목조 건축물의 적심층 화재진압용 분사노즐을 구비한 분사건	10-1188064	통상실시권 허락	2012-09-26
특허	73	복합형 빗물받이 뚜껑 및 그 시공구조	10-1188005	통상실시권 허락	2012-09-26
특허	74	정수지 또는 배수지 내에서 유수지 정체부 형성을 방지하는 배플	10-1179008	통상실시권 허락	2012-08-27
특허	75	수도계량기 카운터 걸림 검사장치	10-1179023	통상실시권 허락	2012-08-27
특허	76	전력절감을 위한 맥동식침전지 운영 방법	10-1178601	통상실시권 허락	2012-08-24
특허	77	화재진압용 복합형 소화장치	10-1168210	통상실시권 허락	2012-07-18
특허	78	수증기 응결이 발생하지 않는 계량기의 카운터 제조방법	10-1164601	통상실시권 허락	2012-07-04
특허	79	표면장력 저감을 이용한 막의 완성성 시험방법	10-1164600	통상실시권 허락	2012-07-04
특허	80	투수포장재의 투수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 및 방법	10-1131767	통상실시권 허락	2012-03-23
특허	81	음식물 쓰레기통	10-1131124	통상실시권 허락	2012-03-15
특허	82	필지경계점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	10-1090346	통상실시권 허락	2011-11-30
특허	83	자가 공기호흡장치	10-1083726	통상실시권 허락	2011-11-09
특허	84	수영장 청소시스템	10-1081507	통상실시권 허락	2011-11-02
특허	85	제설제 재활용장치	10-1074857	통상실시권 허락	2011-10-12
특허	86	부유물 제거장치	10-1069375	통상실시권 허락	2011-09-26
특허	87	전염소 투입률 산출 시스템 및 방법	10-1043521	통상실시권 허락	2011-06-15
특허	88	무동력으로 초기 기동가능한 펌프 시스템	10-1042676	통상실시권 허락	2011-06-13
특허	89	침전슬러지 배출유동화 장치	10-1019206	통상실시권 허락	2011-02-24

특허	90	수도계량기 교체공구	10-1005335	통상실시권 허락	2010-12-24
특허	91	하수도 맨홀용 역지번	10-0994795	통상실시권 허락	2010-11-10
특허	92	바야형상의 파지부를 구비한 소화기	10-0982443	통상실시권 허락	2010-09-09
특허	93	저소음·배수성아스팔트포장도로기능유지차	10-097976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8-27
특허	94	방음벽 지주의 연결구조물	10-097663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8-11
특허	95	펌프의 실링수 공급밸브	10-0970322	통상실시권 허락	2010-07-07
특허	96	후타재가 필요없는 교량용 핑거 조인트 결합 구조물	10-095769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5-04
특허	97	이동식 소화호수 두루마리 장치	10-095509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4-20
특허	98	다기능 세척장치	10-0952293	통상실시권 허락	2010-04-02
특허	99	정밀하게 부피를 잴 수 있는 일정용적을 갖는 용량코니칼 튜브	10-0947767	통상실시권 허락	2010-03-09
특허	100	수도관의 급속동결장치	10-0936841	통상실시권 허락	2010-01-06
특허	101	식생블록 녹화용 모듈	10-0925849	통상실시권 허락	2009-11-02
특허	102	누설방지장치	10-0922996	통상실시권 허락	2009-10-14
특허	103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10-0890246	통상실시권 허락	2009-03-17
특허	104	하수관거 차수로봇용 가물막이 수밀 패널(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886461	통상실시권 허락	2009-02-24
특허	105	약품 발생량 저감을 위한 슬러지 처리시스템	10-0834690	통상실시권 허락	2008-08-12
특허	106	수도의 절수장치	10-0848466	통상실시권 허락	2008-07-18
특허	107	2단 침지형 막여과조를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장치(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843656	통상실시권 허락	2008-06-27
특허	108	약품 및 케익 발생량 저감을 위한 슬러지 처리 시스템	10-0852939	통상실시권 허락	2008-05-27
특허	109	미세먼지 청소차(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810152	통상실시권 허락	2008-02-27
특허	110	수도관의 부식억제 방법	10-0797847	통상실시권 허락	2008-01-18
특허	111	안정기 수납부가 형성된 보수용 커버를 갖는 가로등주	10-0796449	통상실시권 허락	2008-01-15
특허	112	자동제어를 이용한 선택적 전처리 막여과 고도처리장치 및 그 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791896	통상실시권 허락	2007-12-28
특허	113	미끄럼방지용 다짐롤러장치	10-0784031	통상실시권 허락	2007-12-03
특허	114	기초구조물과 분리결합이 용이한 가로등주	10-0775816	통상실시권 허락	2007-11-06
특허	115	빗물받이 받침대	10-0747772	통상실시권 허락	2007-08-02
특허	116	막분리 정수처리장치의 수질 등급코드를 이용한 운전 모드 선택장치 및 그 운영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720140	통상실시권 허락	2007-05-14
특허	117	막분리를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장치의 막오염 지수 연속 모니터링에 의한 응집 전처리공정 제어장치 및 그 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720139	통상실시권 허락	2007-05-14
특허	118	신축이음장치의 고무셀 보호부재	10-0700947	통상실시권 허락	2007-03-22
특허	119	복공판(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665967	통상실시권 허락	2007-01-02
특허	120	다용도 수중점검장치(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342154	통상실시권 허락	2002-06-14
특허	121	황산염 환원균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방법	10-0283403	통상실시권 허락	2000-12-07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실용신안	1	제설재 살포장치용 비산방지장치	20-0486350	통상실시권 허락	2018-04-27
실용신안	2	대기전력 차단용 검전 플러그	20-0487241	통상실시권 허락	2018-08-20
실용신안	3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장치	20-0485115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22
실용신안	4	다짐도 평가장치	20-0485051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16
실용신안	5	소형 LED 식물재배기 자동관수장치	20-0484008	통상실시권 허락	2017-07-12
실용신안	6	친환경 교육용 원형 상자텃밭	20-0483156	통상실시권 허락	2017-04-04
실용신안	7	그레이팅 개폐기	20-0481637	통상실시권 허락	2016-10-19
실용신안	8	다기능 방화담요	20-0481506	통상실시권 허락	2016-10-19
실용신안	9	잔수제거용 호스말이	20-0480708	통상실시권 허락	2016-06-22
실용신안	10	정화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공기호흡기	20-0475460	통상실시권 허락	2014-11-26
실용신안	11	소화기용 도구	20-0472691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실용신안	12	등주형 분전함	20-0470661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26
실용신안	13	맨홀뚜껑 개방장치	20-0470567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19
실용신안	14	산화된 철분거름기구	20-0465120	통상실시권 허락	2013-01-29
실용신안	15	조명장치	20-0459190	통상실시권 허락	2012-03-05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디자인	1	창문 비상탈출용 브래킷	30-0962210	통상실시권 허락	2018-06-21
디자인	2	창문 비상탈출용 브래킷	30-0962209	통상실시권 허락	2018-06-21
디자인	3	상수도용 공기밸브 뚜껑	30-0908245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22
디자인	4	관아음매용 플랜지(거치대를 장착한 밸브)	30-0902760	통상실시권 허락	2017-04-07
디자인	5	맨홀받침 블록(1)(2)(매몰형 지하식 소화전 맨홀하부 기초블록)	30-0902711-0001/0002	통상실시권 허락	2017-04-07
디자인	6	수도계량기 보호함 보온재	30-0814722	통상실시권 허락	2015-09-18
디자인	7	수도용 가변 이형관(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30-0725734	통상실시권 허락	2014-01-13
디자인	8	가로등	30-0743445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디자인	9	가로등	30-0723292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26

○ 처분범위(공통)

- 실시기간 :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또는 서울시)
- 실시내용 : 처분대상 시유특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 선정업체 :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

나. 해외 시유특허권

구분	연번	발명의명칭	국가	출원번호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비고
특허	1	흥부압박시스템	일본	JP/2015-036270	6391497	통상실시권 허락	2018-08-31	국내특허 10-1532418
특허	2	소화장치	중국	CN/2013101588529	103372271	통상실시권 허락	2016-03-16	국내특허 10-1188064 10-1168210
특허	3	소화장치	일본	JP/2013-95853	5681748	통상실시권 허락	2015-01-16	국내특허 10-1188064 10-1168210
특허	4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미국	US/2011/0220558	8834711	통상실시권 허락	2014-09-16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5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중국	CN/200980122574	102066271	통상실시권 허락	2013-09-11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6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일본	JP/2011-512410	5356512	통상실시권 허락	2013-09-06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7	조류퇴치장치	미국	US/2014/631663	9655358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23	국내특허 10-1743707

○ 처분범위(공통)

- 실시기간 :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실시지역 : 각 시유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전역
- 실시내용 : 처분대상 시유특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 선정업체 :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

3. 신청방법

가. 기 간 : 2019. 1. 24(목) ~ 2. 11(월) [토·일요일 제외한 10일간]

※ 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접수 가능

나. 방 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조직담당관 담당자 전운지 앞
- 이메일 : onjee@seoul.go.kr

다. 구비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4. 신청자격

○ 대상 시유특허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해외특허)의 실시 가능업체(사업자등록 업체)

5.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계약대상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한다.

나. 통상실시권에 대한 실시료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 다만, 시유특허권 실시료 견적금액은 수의계약신청서에 기재한다.

※ 실시료 견적금액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평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기본율 : 기본 3%. 다만, 해당 시유평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 이하로 할 수 있음

라. 실시료 견적금액은 예상금액을 기재할 뿐 계약기간 만료 후 실제납부금액과 다를 수 있다.

마. 공공성·사회성에 반하거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사. 계약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인등기부 등본(1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시유평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이 된 이후에는 제품 홍보를 위해 계약자의 업체명, 대표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일부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6. 계약 및 실시료 정산 방법

가. 계약대상자가 결정되면 계약대상자에 한해 실시를 위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제출서류를 확인한다.

나. 계약내용

1) 실시기간은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으로 한다.

※ 특허를 이용하여 설치되는 구조물 및 처리시스템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본 공고와 별도로 특허가 반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범위 내로 한다.

2)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및 제품의 판매단가 기준은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수량 및 가격으로 한다.

3) 실시료 견적금액 산정식의 점유율은 계약체결시 협의하여 확정한다.

4) 기본율은 기본 3%로 하여 년 단위로 실시료를 산정\*한다.

\* 다만, 해당 시유평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 이하로 조정 할 수 있음

다. 지정된 처분범위와 견적금액을 내용으로 계약서 확인과 함께 서울시가 날인한 “시유평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2부)” 에 계약대상자 날인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 시유평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정산내용

1)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년 단위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확인하여 실시료 납부액을 산정한다.

※ 실시료산정식 = 제품의 총판매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 총판매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평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계약 체결시 확정함)

- 기본율 : 기본 3% (계약 체결시 확정함)

2) 실시료 정산시 실시실적 증빙서류로 총매출액 확인서류 1부, 제품별 판매실적 확인서류

1부를 제출한다.

- 3) 제품별 판매실적 확인서류는 해당제품의 재고자산수불부, 거래처별 납품내역서, 제품판매현황자료, 회계장부,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은 과세서류 등 공인된 제품별 판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
- 4) 실시료 매출액 미발생시 사유서 제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7. 문의처

- 기타 시유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권설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담당자 전용지(☎02-2133-6739, onjee@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의 계 약 신 청 서**

**(시유특허권 처분)**

신청인	① 명 칭 (대 표 자 )	(예시) (주) 기업체명 (홍길동)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권 리 의 표 시		(예시) 특허등록 제 0000 호		
⑤ 발 명 ( 고 안 ) 의 명 칭				
⑥ 처 분 의 종 류		<input type="checkbox"/> 매수 <input type="checkbox"/> 전용실시(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통상실시(권)		
⑦ 실 시 범 위		기 간 : 201 . . . - 201 . . . ( 년간) 지 역 : 내 용 : (예시) 처분대상 시유특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⑧ 견 적 금 액		(예시) 960천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 청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당해 시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사업계획서(예시)**

1. 회사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홈페이지/e-mail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규모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			
	종업원수(명)			

2. 회사 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3. 대표자 이력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경력	기간	기업체명	주생산 품목	최종직위

4. 인 원 현 황

부서명	경영직	사무직	영업직	...	합계
인사/총무					
생산					
영업					
.					
.					
.					
합계					

5. 시유평특허 사업화 추진계획

- ① 당해 기술 분야에 대한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 ②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실시료 견적서**

권리의 표시	특허 제 호
발명의 명칭	
실시료 견적금액	금 원

[예시]

- 실시료의 견적금액 산정근거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100개
  - 제품의 판매단가/단위 : 400천원/개
  - 점유율 : 80%
  - 기본율 : 3%
  - ※ 해당제품의 경우 특허10-00000호의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바 점유율 80%로 신청함
- 실시료 산출금액
  - 100개 × 400천원/개 × 80% × 3% =960천원

※ 기재 요령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판 매 단 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
3. 점 유 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 본 율 : 3%

2019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이사 홍길동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6호

**2019년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 공고**

서울시에서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자 ‘2019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공동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1. '19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 개요

- 제안 자격 :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임시)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운영회
  - ※ 구상단계 용역 시행 중 미지원, 운영단계 4년간 차등지원
  - ※ 임시 주민협의체 구성원 10인이상 지원가능
- 공모 횟수 : 연 4회 (신청시기 1월, 3월, 6월, 9월)
  - ※ 신청시기별로 자치구(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부서)에서 주민공동체에 안내
- 사업 기간
  - 1사분기 : 협약시 ~ 2019년 3월 31일
  - 2사분기 : 협약시 ~ 2019년 6월 30일
  - 3사분기 : 협약시 ~ 2019년 9월 30일
  - 4사분기 : 협약시 ~ 2019년 12월 20일(미정)
- 정산 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 당해 회계연도 정산을 위해 사업기간 및 정산시기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공동체 자생력 확보 및 공동체 활성화 참여의식 도모를 위해 시(80%, 월 40만원 한도), 주민(20%) 매칭 지원
  - ※ 최초 신청 공동체 첫 분기 월 50만원 한도 지원, 두 번째 분기부터 시:주민2 매칭 시행, 월 40만원 한도
  - ※ 지원금액은 제안 상황 및 예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산집행의 주요원칙
  - 예산집행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
  -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 보조사업비 및 자부담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
  - 선정된 주민공동체 대표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현황 보고서 및 정산서를 자치구에 제출

3. 사업절차

절 차	내 용	추진주체
사업계획 수립· 공고	신청 일정, 절차, 지원 규모 등	서울시
↓		
제안서 접수	자치구 담당부서 검토, 서울시 제출	주민공동체 자치구
↓		
심사/선정	1) 보조금 심의 위원회 구성 2) 선정심사 3) 선정결과 개별 안내	서울시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1) 협약(자치구-주민공동체) 2) 보조금 교부	자치구
↓		
사업실행	1) 지원사업 추진 2) 현장 모니터링	주민공동체 자치구
↓		
결과보고 및 평가	정산 및 결과보고	주민공동체 자치구

4. 제안서 접수

- 접수 방법 : 자치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 부서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주민조직 소개, 예산계획서
- 제출 시기(※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서울시 홈페이지 안내)
  - 1사분기 : 2019년 1월 23일(수) 까지
  - 2사분기 : 2019년 3월 15일(금) 까지
  - 3사분기 : 2019년 6월 14일(금) 까지
  - 4사분기 : 2018년 9월 16일(월) 까지

5. 심사·선정

- 일 정 : 자치구로 접수된 제안서가 서울시에 제출된 직후
  -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함
- 심사 기준

심사항목		내 용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주민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해당 지역의 주민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③ 사업 현실성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마을사업 수행 경험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④ 자발적 주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li> <li>•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li> </ul>
	⑤ 예산 현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li> <li>•책정된 자부담 사업비의 적정성</li> <li>•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li> </ul>
	⑥ 민관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li> <li>•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li> </ul>

※ 위 심사기준은 예시이며 필요시 추가·삭제할 수 있음

○ 선정자 안내 :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한 공동체 개별 안내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양식 다운로드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 주택·새소식 - 주택·도시재생 검색

○ 문의 사항 : 자치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부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5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02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등록 직인(등록사유 : 2019.1.1.字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주택공급과	주택공급과 일상경비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19.1.1.	
	주택공급과 분임물품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07호

2019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3조 및 2019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1. 지원사업 분야

-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2. 신청자격

-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을 추진할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최근1년 내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단체(법인)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어야 함

제 외 대 상

<제외 단체>

-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지 않은 단체
- ◆ 최근 1년 내에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단체
- ◆ 연속 3년 이상 선정된 단체
- ◆ 기타 심사결과 보조금 교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제외 사업>

-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 전시성, 1회성 행사 성격이 강한 단기간 종료 사업
-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등
- ◆ 사업수혜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3. 사업추진기간 : 2019년 3월 ~ 11월

4. 지원규모 및 선정방법

- 사업별 최대 3천만원 이하(1개 단체 1개 사업)
  - 10개 내외 단체 선정예정 ※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서류심사(1단계 : 요건심사, 2단계 : 내용심사)

5. 신청기간 및 방법

- 일 시 : 2019. 1. 30.(수) 09:00 ~ 2. 15.(금) 18:00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신청·접수

주 의 사 항

- 마감일 18:00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 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에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6. 제출서류(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양식 기재)

- 사업 신청서 1부
-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단체 등록증 또는 법인 허가증 사본(스캔파일) 1부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1. 31.(목) 14:00
- 장 소 : 서울시청 본청 3층 소회의실1
-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방법, 선정방법 안내 등
  - ※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주차요금(1,000원/10분)이 지원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8.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적합성, 사업 수행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등
- 결과발표 : 2019. 3. 8.(금)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및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선정단체 개별 통지

9. 집행지침교육

- 교육일시 : 2019. 3. 15.(금) 14:00 예정
- 내 용 : 예산 항목별 집행기준 및 주의사항, 증빙서류처리 방법 등 보조금 집행지침 전반에 대한 교육
  - ※ 집행지침교육 의무화 : 불참 시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불가

10.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서 상 월별집행 계획에 따라 격월 교부
- 서울시와 지원단체 간 약정 체결 이후 사업비 집행 가능
- 약정 체결 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통장에는 지원보조금의 최소 5%이상을 예치하여야 함
- 수행상황점검(중간점검) 및 최종성과평가(사업완료 후)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20년도 지원 사업 결정시 반영하며 정산검토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집행내역 등 최종평가 자료제출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담당자 : 김송이, 02-2133-6381, song0801@seoul.go.kr)으로 문의바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22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01호(2011.12.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6호(2012.9.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0호(2013.10.10)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20호(2013.12.12)로 공원조성계획결정, 제2014-78호(2014.3.6.)로 실시계획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1호(2017.7.17.), 제2015-184호(2015.6.25.)로 실시계획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3호(2015.7.9.)로 실시계획 재고시된 경의선숲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22조, 제28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99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최 종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경의선 숲길 (공원)	근린공원 (①-가)	마포구 연남동 448-4 ~ 마포구 동교동 190-1	34,359.7	감)121.7	34,238.0	서울시 제2011-401호 (2011.12.29.)	
	2		근린공원 (①-나)	마포구 동교동 190-1 ~ 마포구 창전동 1-29	8,649.2	감)264.2	8,385.0	서울시 제2011-401호 (2011.12.29.)	
	3		근린공원 (①-다)	마포구 신수동 85-26 ~ 마포구 염리동 169-12	31,670.3	증)968.3	32,638.6	서울시 제2011-401호 (2011.12.29.)	서울시 제2013-330호 (2013.10.10.) -경미한변경-
	4		근린공원 (①-라)	마포구 도화동 1-402 ~ 용산구 용문동 5-133	19,541.6	감)32.2	19509.4	서울시 제2011-401호 (2011.12.29.)	
	5		근린공원 (①-마)	용산구 원효로2가 1-73 ~ 용산구 신계동 1-276	7,787.2	증)157.4	7,944.6	서울시 제2011-401호 (2011.12.29.)	
합 계					102,008.0	증)707.6	102,715.6		

나.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결정 및 변경내용	결정 및 변경사유	도 면 표지번호
변경	경의선 숲길 (공원)	근린공원 (①-가)	-위 치 : 마포구 동교동 190-1 외 1필지 -변경내용 : 공원 편입 71.3㎡ 공원 해제 193㎡	현황 도로와 공원 조성 부분이 현장과 상이한 구역 조정	1
		근린공원 (①-나)	-위 치 : 마포구 동교동 190-1 -변경내용 : 공원 해제 97.9㎡	환기구 등 설치코자 하였으나 계 획 변경되어 최종 미조성된 구역	2
			-위 치 : 마포구 창전동 1-30 -변경내용 : 공원 해제 166.3㎡	최종 미조성되어 건물이 존치되어 있는 구역 공원 해제	2
		근린공원 (①-다)	-위 치 : 마포구 신수동 88-130 외 2필지 -변경내용 : 공원 편입 692.5㎡	미포함된 녹지대 일부, 공원 지역으로 편입	3
			-위 치 : 마포구 신수동 85-26 외 11필지 -변경내용 : 공원 편입 275.8㎡	미포함된 녹지대 일부, 공원 지역으로 편입	3
		근린공원 (①-라)	-위 치 : 용산구 용문동 5-194 외 1필지 -변경내용 : 공원 해제 32.2㎡	최종 미조성되어 건물이 존치되어 있는 구역 공원 해제	4
근린공원 (①-마)	-위 치 : 용산구 신계동 1-280 외 2필지 -변경내용 : 공원 편입 157.4㎡	공원 진출입로 공원 지역으로 편입	5		

- 다. 편입 토지조서 : 「붙임1」
- 라. 관계 도서 : 「붙임2」

2.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의선 지상구간(용산문화체육센터 ~ 가좌역)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사업

다. 사업면적 : 102,715.6㎡(근린공원)

라. 사업시행자

- 성 명 : 서울특별시장(공원녹지정책과장)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 귀속 결정 사항 반영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9.6.30.

사. 시설의 귀속 결정 사항

- 경의선 지하화에 따라 지상 유휴부지를 그린웨이 개념의 공원으로 복구 및 녹화 조성한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지상권)은 국가(국토교통부)로 귀속하고, 유지관리의 비용 부담과 모든 책임은 서울특별시가 지며, 공사비 및 향후 발생할 관리비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리 위탁비 및 토지사용료와 상계 처리
- 귀속 결정내용

구 분	공원명	시설세분	위치	면적	귀속결정	비고
공 원	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경의선 지상구간 (용산문화체육센터~ 가좌역)	102,715.6㎡	국토교통부	

- 시설의 관리자 : 공원관리청(서울특별시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제4호 카목
- 시설 귀속 조서 : 「붙임3」

3. 비치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2133-2026)

4. 열람기간 : 공보 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

5. 관계 서류는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2133-2026)에 비치하고 있으니 상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편입토지 조서.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변경).  
3. 시설귀속 조서. 끝.

붙임1

편입토지 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기정	마포구 동교동	190-1	철도용지	22,600.3	9,404.9	국토교통부				
	변경	마포구 동교동	190-1	철도용지	22,600.3	9,206.6	국토교통부				일부 편입 및 해제
2	기정	마포구 연남동	375	철도용지	12,496.0	11,416.0	국토교통부				
	변경	마포구 연남동	375	철도용지	12,496.0	11,394.7	국토교통부				일부 해제
3	기정	마포구 창전동	1-30	철도용지	2,037.0	1,822.0	국토교통부				
	변경	마포구 창전동	1-30	철도용지	2,037.0	1,655.7	국토교통부				일부 해제
4	기정	마포구 신수동	88-130	대지	385	0	국토교통부				
	변경	마포구 신수동	88-130	대지	385	26.7	국토교통부				신규 편입
5	기정	마포구 신수동	88-5	철도용지	145.0	31.7	국토교통부				
	변경	마포구 신수동	88-5	철도용지	145.0	135.2	국토교통부				일부 편입
6	기정	마포구 신수동	85-26	철도용지	11,980.0	7,389.9	국토교통부				
	변경	마포구 신수동	85-26	철도용지	11,980.0	7,957.2	국토교통부				일부 편입
7	기정	마포구 신수동	85-51	철도용지	116.0	67.1	국토교통부				
	변경	마포구 신수동	85-51	철도용지	116.0	114.5	국토교통부				일부 편입
8	기정	마포구 신수동	85-61	철도용지	7.0	2.5	국토교통부				
	변경	마포구 신수동	85-61	철도용지	7.0	6.6	국토교통부				일부 편입
9	기정	마포구 신수동	85-63	철도용지	73.0	33.6	국토교통부				
	변경	마포구 신수동	85-63	철도용지	73.0	73.0	국토교통부				일부 편입
10	기정	마포구 신수동	85-65	철도용지	83.0	42.7	국토교통부				
	변경	마포구 신수동	85-65	철도용지	83.0	83.0	국토교통부				일부 편입
11	기정	마포구 신수동	85-67	철도용지	79.0	43.8	국토교통부				
	변경	마포구 신수동	85-67	철도용지	79.0	79.0	국토교통부				일부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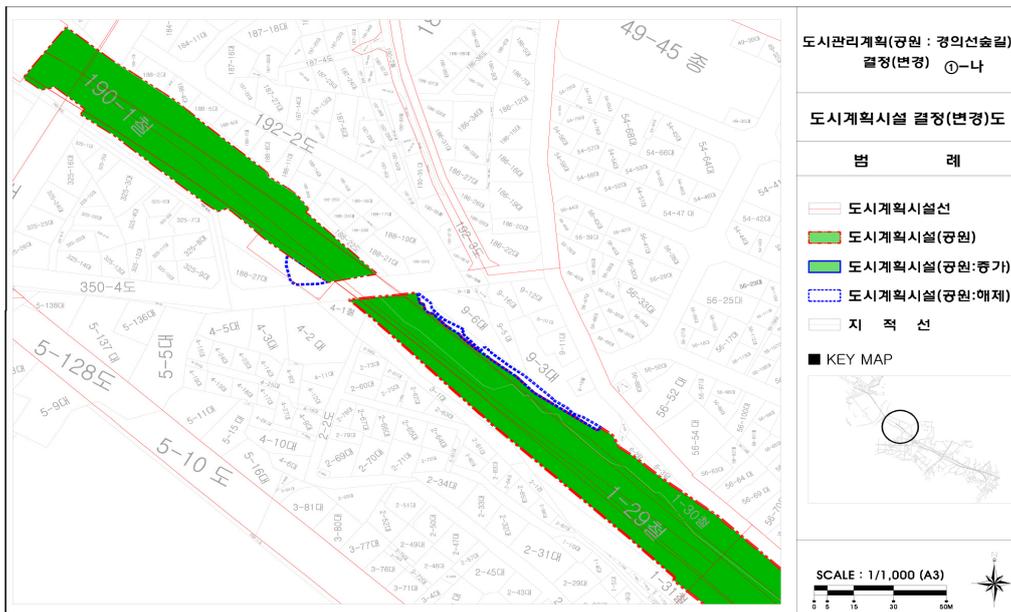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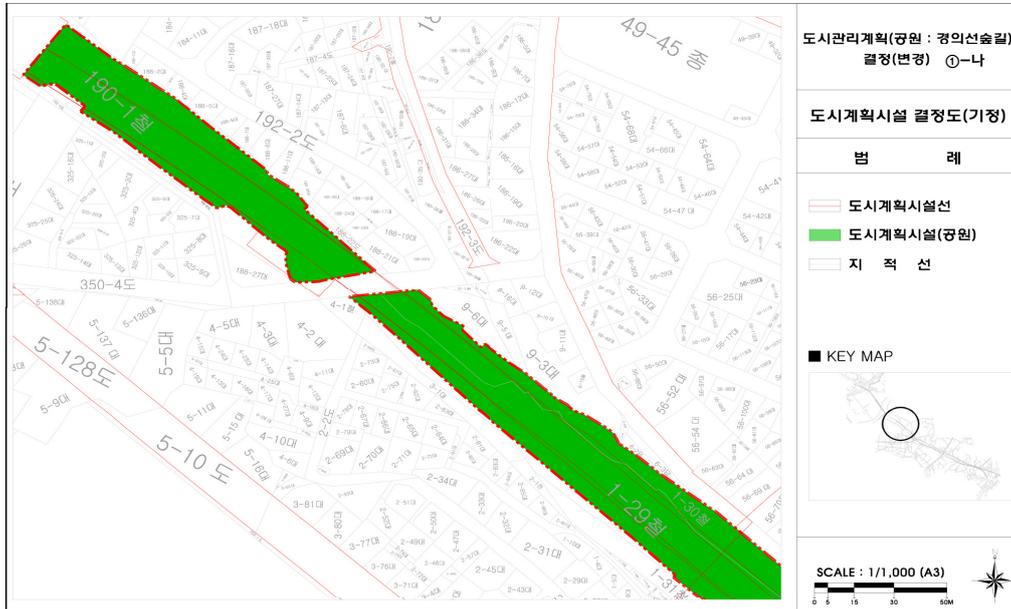
12	기정	마포구 신수동	85-1	철도용지	89.0	47.2	국토교통부				
	변경	마포구 신수동	85-1	철도용지	89.0	89.0	국토교통부				일부 편입
13	기정	마포구 신수동	85-60	철도용지	76.0	43.0	국토교통부				
	변경	마포구 신수동	85-60	철도용지	76.0	76.0	국토교통부				일부 편입
14	기정	마포구 신수동	85-62	철도용지	53.0	35.6	국토교통부				
	변경	마포구 신수동	85-62	철도용지	53.0	53.0	국토교통부				일부 편입
15	기정	마포구 신수동	85-64	철도용지	79.0	67.2	국토교통부				
	변경	마포구 신수동	85-64	철도용지	79.0	79.0	국토교통부				일부 편입
16	기정	마포구 신수동	85-66	철도용지	79.0	78.6	국토교통부				
	변경	마포구 신수동	85-66	철도용지	79.0	79.0	국토교통부				일부 편입
17	기정	용산구 용문동	5-194	철도용지	35.4	12.1	국토교통부				
	변경	용산구 용문동	5-194	철도용지	35.4	0	국토교통부				전부 해제
18	기정	용산구 용문동	5-195	철도용지	32.1	20.1	국토교통부				
	변경	용산구 용문동	5-195	철도용지	32.1	0	국토교통부				전부 해제
19	기정	용산구 신계동	1-280	철도용지	203.7	0	용산구				
	변경	용산구 신계동	1-280	철도용지	203.7	21.0	용산구				신규 편입
20	기정	용산구 신계동	1-282	철도용지	775.9	0	국토교통부				
	변경	용산구 신계동	1-282	철도용지	775.9	43.6	국토교통부				신규 편입
21	기정	용산구 신계동	1-276	철도용지	6,537.5	2766.4	국토교통부				
	변경	용산구 신계동	1-276	철도용지	6,537.5	2,859.2	국토교통부				일부 편입

붙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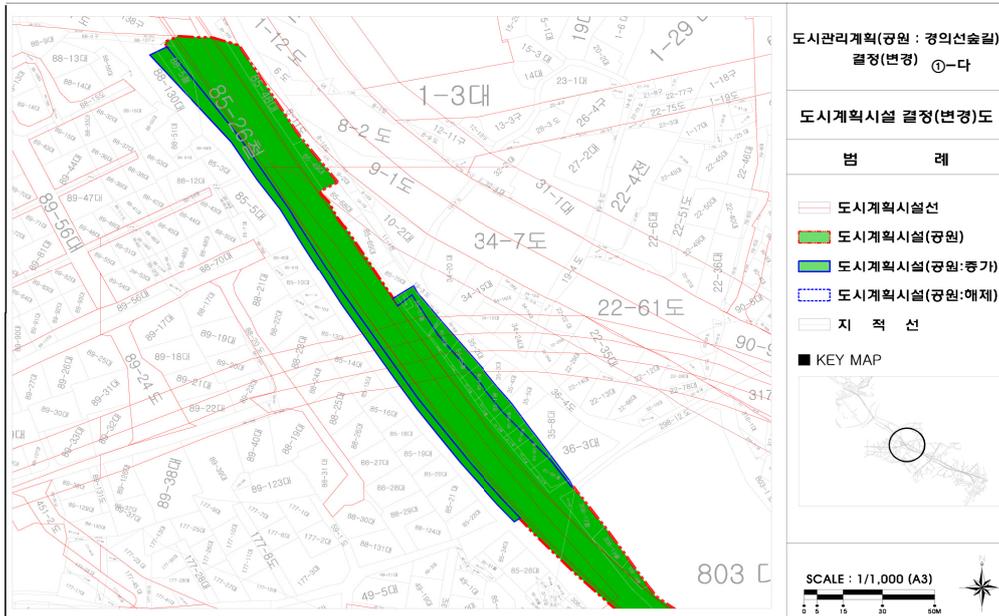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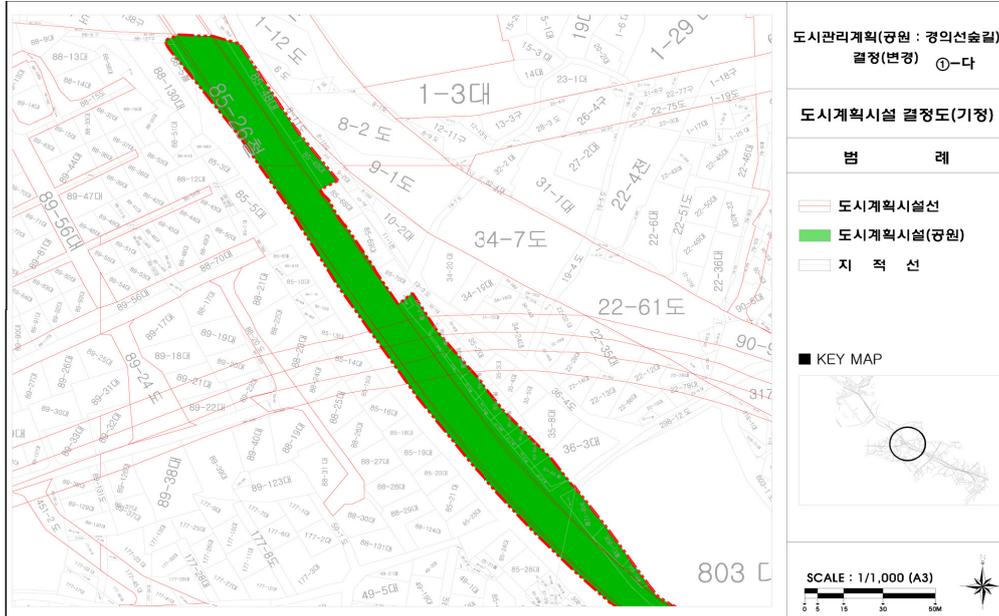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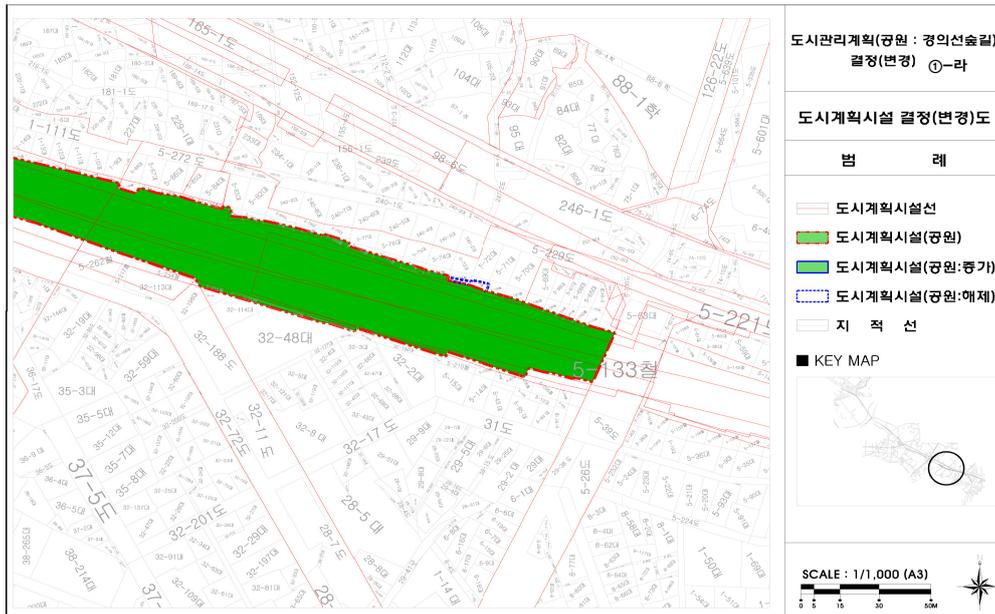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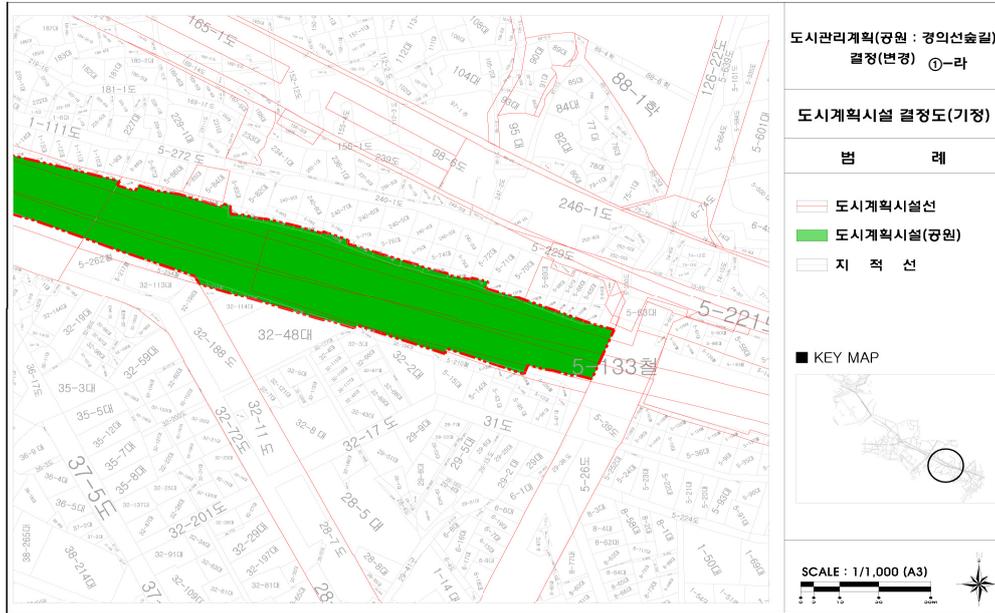
도면 NO.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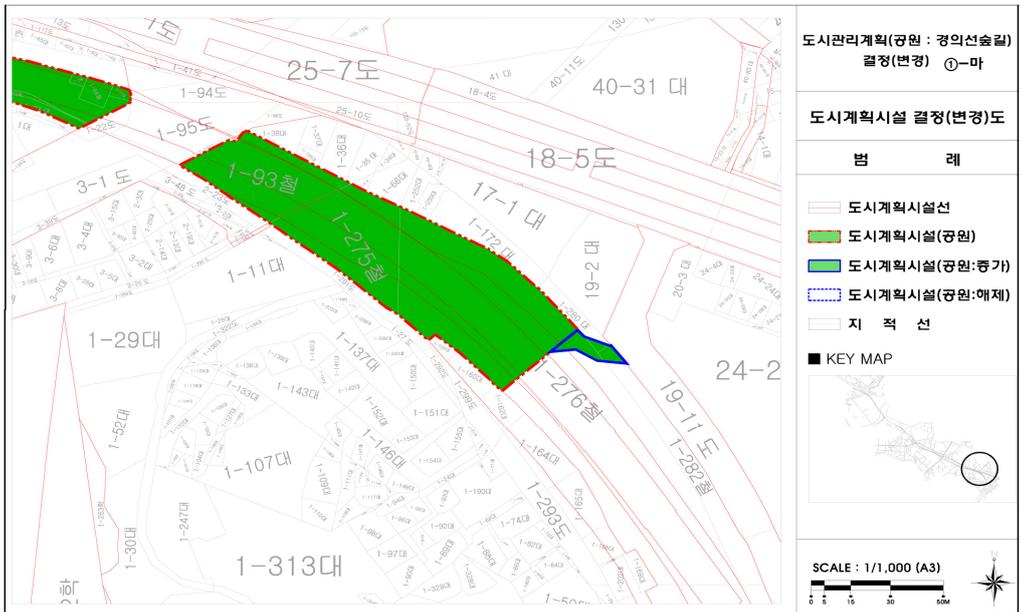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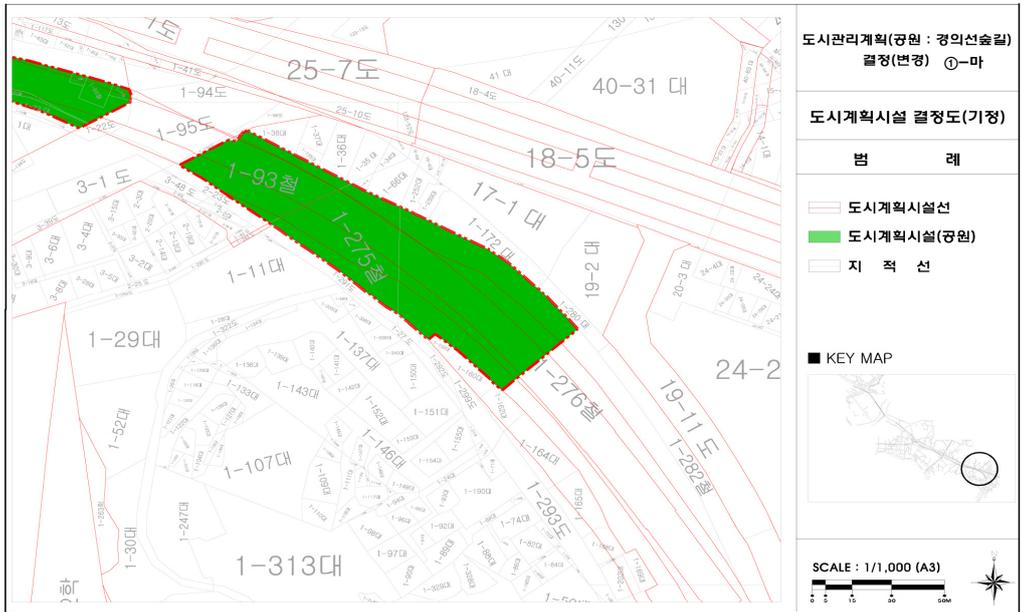
도면 NO.2



도면 NO.3



도면 NO.4



도면 NO.5

붙임3

□ 시설 귀속 조서

구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시설물	캔들분수	-	개소	2
	염리동 폰드	-	m <sup>2</sup>	105
	레인기든(대형)	-	m <sup>2</sup>	89
	레인기든(새창)	-	m <sup>2</sup>	89
	안개분수	-	개소	1
	물길(수로)	계류	m	881
	신수동 폰드A	-	m <sup>2</sup>	56
	신수동 폰드B	-	m <sup>2</sup>	74
	동 폰드C	-	m <sup>2</sup>	112
	잔디수로	-	m	730
	생태수로	W400	m	78
	생태측구A	W400	m	23
	생태측구B	W400~600	m	120
	연남동 폰드A	-	m <sup>2</sup>	178
	연남동 폰드B	-	m <sup>2</sup>	126
	연남동 폰드C	-	m <sup>2</sup>	256
	앞음벽A-1	H500	m	398
	앞음벽A-2	H500	m	210
	앞음벽A-2-1	H500	m	34
	앞음벽A-3	H500	m	20
	앞음벽A-4	H500	m	46
	앞음벽A-5	H500x600, 하드우드	m	90
	앞음벽B-1	H450	m	211
	앞음벽B-2	H450	m	31
	앞음벽B-3	H450	m	8
	앞음벽B-4	H450, 개비온	m	67
	앞음벽 C	H400	m	23
	앞음벽A(1단계)	D500	m	23
	앞음벽B(1단계)	D1,500	m	8
	앞음벽C(1단계)	D400	m	25

구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시설물	등의자	1,800x612x905	개소	22
	평의자	1,800x466x430	개소	12
	연식의자	H450x2,330x500	개소	118
	연식의자	D500	개소	4
	수목보호대A	2,400x2,400	개	5
	수목보호대 B	1,200x1,200	개	49
	수목보호대C	1,500x1,500	개	4
	수목보호대D	1,500x1,500	개	5
	수목보호대 E	2,000x2,000	개	3
	수목보호대 F	1,200x1,200	개	3
	수목보호대D	1,400x1,400	개	19
	수목보호호출덮개	1,400x1,400	개	19
	화분대	Ø1,120xH440	개	46
	녹지보호책	H120	m	54
	웬스 A-1	H1,200xW1,000	경간	76
	웬스 A-2	H1,200xW1,000	경간	46
	웬스 A-3	H1,200xW1,000	경간	13
	웬스 C	H1,100xW2,400	경간	88
	목재웬스	H1800*H1800	m	101
	목재웬스	H1500*H1500	m	99
	메쉬웬스	L2,000xH1,800	경간	439
	메쉬웬스출입문	L2,000xH1,800	개소	1
	웬스A	1,500x1,400	경간	170
	웬스C-1	1,500x1,500	경간	96
	웬스D	1,800x1,800	경간	40
	웬스E	1,800x1,200	경간	60
	EGI웬스	H24,000	경간	44
	트렐리스	1,500x3,000	경간	12
	램프난간	H1,000	경간	19
	안전난간	-	m	205

시 설 비	휴게데크	4,200x20,500	개소	1	시 설 비	인도안내판	240x50x610	개	8	
	파고라A	13,450x2,500xH3,000	개소	1		거주자주치구역 안내판	600x100x1500	개	2	
	파고라B	10,400x2,500xH3,000	개소	1		공원조성안내판	600x100x1500	개	1	
	파고라	H2,595x3,650x20,000	개소	2		송장내 히스토리월	-	식	1	
	파고라	22,000x2,500xH3,000	개소	1		마을이야기 설명판A	-	식	1	
	가제보	3,000x3,000x2,950	개소	2		마을이야기 설명판B	-	식	1	
	평상	1,800x1,800x500	개소	2		마을이야기 설명판C	-	식	1	
	등의자	1,500x570xH915	개소	108		폐열차	-	식	1	
	평의자	H545x1,500x500	개소	16		음수전	-	개	7	
	수목해설판	300x220xH700	개	4		조형물	-	식	8	
	선로변환기 (조형물)	-	식	3		운동시설	-	개	5	
	철길간널목 차단기(조형물)	-	식	3		이동식화장실	3,100x6,000x3,450	동	1	
	자전거 공기주입기	400x300x590	개소	1		공원등	-	개	310	
	자전거도로표지병	130x120x20	개	71		블라드등	-	개	309	
	블라드A	H800xD105	개	135		수 목	금전송	H4.0xW2.0	주	32
	블라드B	D105x800	개	64			소나무(장송)	H10.0xR50	주	11
	블라드C	G145xH950	개	27			소나무(장송)	H10.0xR45	주	19
	자전거거치대	630x3,900xH330	개소	2			소나무(장송)	H9.0xR40	주	89
	홍대입구 게이트월	-	식	2			소나무(장송)	H9.0xR35	주	105
	수목투사등 (지중등)	-	개	185			소나무(장송)	H9.0xR30	주	1
	CCTV	-	개	50			네티나무	H5.5xR20	주	33
	종합안내판	600x900xH1,900	개	76			네티나무	H4.0xR18	주	42
	방향안내판	600x900xH1,700	개	20			네티나무	H4.0xR15	주	24
	공원이용안내판	600x100xH1,800	개	5			네티나무	H3.5xR10	주	3
	선릉물천안내판	-	개	1			대왕참나무	R40	주	4
	시설안내판	600x900xH1,700	개	9			대왕참나무	R35	주	7
자전거도로 안내판	240x50x610	개	8	대왕참나무	H5.0xR30		주	5		
수 목	소나무	H6.0xW3.0xR30	주	38	대왕참나무		H4.5xR20	주	122	
	스트로브잣나무	H5.0xW2.5	주	60	대왕참나무		R18	주	44	
	스트로브잣나무	H4.0xW2.0	주	408	대추나무(이식)		R15	주	1	
	스트로브잣나무	H3.0xW1.5	주	20						

수 목	스트로브잣나무	H2.0×W1.0	주	71	수 목	때죽나무	H3.5×R10	주	10
	주목	H3.0×W2.0	주	49		때죽나무	H2.5×R8	주	15
	스트로브잣나무 (이식)	R10-15	주	2		때죽나무	R20	주	1
	측백나무	H2.0×W0.6	주	30		메타세퀘이아	H5.5×B15	주	216
	측백나무	H1.5×W0.4	주	800		메타세퀘이아	H5.0×B12	주	85
	측백나무	H3.5×W1.5	주	40		목련	H3.5×R15	주	11
	서양측백나무	H2.0×W0.6	주	386		목련	H2.5×R8	주	17
	대나무	H4.0×R4	주	45		목련	H4.0×R20	주	17
	감나무(이식)	R10	주	5		마가목	H3.0×R8	주	30
	계수나무	H4.5×R15	주	29		마가목	H3.0×R12	주	32
	꽃사과	H3.5×R10	주	15		모감주나무	H4.0×R15	주	16
	꽃사과	H2.5×R6	주	5		모감주나무	H3.5×R10	주	18
	꽃복숭아	H3.5×R12	주	10		매화나무	H3.5×R10	주	17
	꽃복숭아	H3.5×R10	주	19		목련(이식)	R10	주	5
	노티나무	H6.0×R40	주	7		물푸레나무	H3.5×R15	주	23
	노티나무	H5.0×R30	주	43		베롱나무	H3.5×R15	주	6
	노티나무	H5.0×R25	주	56		버즘나무	H6.0×B20	주	3
	버드나무	H4.0×B12	주	3		층층나무	H2.5×R8	주	20
	백목련	H3.5×R12	주	8		남천	H1.0×37가지	주	1,270
	산단풍	H3.5×R15	주	11		사철나무(이식)	H1.2	주	200
	산벚나무	H4.0×B12	주	206		사철나무	H1.0×W0.3	주	11,990
	산벚나무	H4.5×B15	주	39		사철나무	H1.2×0.4	주	4,330
	산수유	H3.5×R15	주	16		눈주목	H0.3×W0.3	주	8,380
	산수유	R30	주	4		회양목	H0.3×W0.3	주	36,170
	산수유	H2.5×R8	주	19		회양목(이식)	H0.3×W0.3	주	65
	수양벚나무	H3.5×B12	주	8		개나리	H0.6×37가지	주	70
	왕버들	H5.0×R15	주	41		개쉬렁나무	H1.0×W0.3	주	800
	왕벚나무	B25	주	1		공조팝	H0.6×W0.3	주	1,530
	왕벚나무	H4.5×B15	주	110		꽃댕강나무	H0.6×W0.3	주	1,300
	왕벚나무	H4.0×B12	주	452		나무수국	H1.2×W0.8	주	1,283
왕벚나무	H4.0×B10	주	28	노랑말채나무	H1.2×W0.6	주	1,000		
은행나무	H5.0×B15	주	117	능소화	R4×L2.5	주	8		
은행나무	H4.5×B12	주	12	덜꿩나무	H1.0×W0.4	주	1,860		
은행나무	H7.0×B30	주	4	당굴장미	H1.5×57가지	주	2,480		

수 목	은행나무	H5.5×B25	주	3	수 목	밀밭도리	H1.5×W0.6	주	2,000
	이팝나무	H4.0×R20	주	70		매자나무	H0.6×W0.4	주	660
	이팝나무	H4.0×R15	주	5		명자나무	H1.0×W0.6	주	35
	이팝나무	H4.0×R12	주	24		명자나무	H0.8×W0.5	주	2,260
	이팝나무	H2.5×R8	주	15		명자나무	H1.0×W0.6	주	2,000
	이팝나무	R33	주	1		무궁화	H1.2×W0.3	주	210
	이팝나무	R35	주	1		백태기나무	H1.5×W0.6	주	12
	자작나무	H4.0×B10	주	60		백태기나무	H0.5×W0.6	주	72
	중국단풍	H4.5×R25	주	36		백당나무	H1.2×W0.8	주	494
	청단풍	H6.0×R25	주	14		백철쭉	H1.2×W1.2	주	3,644
	청단풍	H4.0×R20	주	118		백철쭉	H0.4×W0.4	주	13,650
	청단풍	H3.0×R6	주	16		병꽃나무	H1.0×W0.4	주	18,511
	청단풍	H3.5×R15	주	231		병꽃나무	H1.2×W0.6	주	2,300
	청단풍	R12	주	3		불두화	H1.5×W1.0	주	38
	청단풍	H3.0×R10	주	19		산수국	H0.3×W0.4	주	8,950
	청단풍(이식)	R20	주	1		산철쭉	H0.4×W0.4	주	1,500
	칠엽수	R30	주	14		삼색조팝	H0.6×W0.3	주	270
	칠엽수	H5.5×R25	주	3		삼색조팝	H0.3×W0.3	주	6,780
	칠엽수	R40	주	14		수수꽃다리	H1.5×W0.6	주	17
	산딸나무	H2.5×R8	주	36		수수꽃다리	H1.2×W0.4	주	243
	산딸나무	R6	주	15		영산홍	H0.3×W0.3	주	17,210
	산새나무	H3.0×R8	주	13		영산홍	H0.3×W0.4	주	375
	홍단풍(이식)	R15	주	12		자산홍	H0.4×W0.4	주	17,130
	홍단풍	H4.0×R20	주	11		조팝나무	H0.8×W0.4	주	9,950
	회화나무	H5.0×R30	주	16		조팝나무	H0.6×W0.3	주	350
	자엽지두	H2.0×R6	주	6		좁쌀나무	H1.2×W0.4	주	2,625
	니무수국	H2.0×W0.8	주	42		진달래	H0.8×W0.8	주	108
	복자기	H2.5×R6	주	16		철쭉(이식)	H0.8	주	60
	철자화	H1.5×W0.6	주	99		황매화	H1.0×W0.4	주	11,860
	화살나무	H1.4×W1.0	주	1,330		흰말채나무	H1.0×W0.4	주	8,540
	화살나무	H1.0×W0.6	주	2,836		잔디	0.4*0.6*0.015	m <sup>2</sup>	15,343
	화살나무	H0.8×W0.4	주	2,310		잔디	0.18*0.18	m <sup>2</sup>	14,599
				잔 디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42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안) 공람·공고**

도시 및·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공람명칭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2. 공람기간 : 2019.1.24 ~ 2019.2.7.(15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2133-4635, 4636)
  - 각 자치구 홈페이지 및 담당부서(별첨 참조)
4. 공간적 범위
  - 도심, 마포, 광역중심 지역외에 지역중심 및 주요역세권 등의 사업, 준공업 지역 등
5. 목표연도 : 2025년
6. 공람 주요 내용
  - 도심부 주거 주용도 및 주거비율 완화에 관한 사항
  -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확보기준에 관한 사항
  - 생활SOC 인센티브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등
7. 기본계획 관련 도서 : 붙임(열람장소 비치, 게재 생략)

**붙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의견서 양식**

첨부 1)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열람장소	전화번호	열람공람장소	전화번호
종로구 도시개발과	02)2148-2673	중 구 도심재생과	02)3396-5772
용산구 도시계획과	02)2199-7403	성동구 주거정비과	02)2286-6559
광진구 주택과	02)450-1380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02)2127-4293
중랑구 도시개발과	02)2094-2202	성북구 주거정비과	02)2241-3123
강북구 도시계획과	02)901-6852	도봉구 주택과	02)2091-3522
노원구 도시관리과	02)2116-3861	은평구 도시계획과	02)351-7405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02)330-1614	마포구 도시계획과	02)3153-9362
양천구 도시계획과	02)2620-3513	강서구 주택과	02)2600-6150
구로구 주택과	02)860-2962	금천구 도시계획과	02)2627-1553(00)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02)2670-3538	동작구 도시개발과	02)820-9265
관악구 도시계획과	02)879-6353	서초구 주거개선과	02)2155-7349
강남구 도시계획과	02)3423-6103(00)	송파구 주거사업과	02)2147-2899
강동구 도시계획과	02)3425-6052		

첨부2)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공람에 따른 의견서

성 명	(인)	연락처	
거주지 주소			
의 견			
제출일	년 월 일		

**구 고 시**

◆ 광진구고시 제2019-1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420호(1992.12.14.)로 결정된 광진구 군자동 497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광진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지하철 이용 시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기존 지하철 출입구를 E/S로 신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코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지번명)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철도	도시철도 (군자정차장)	성동구 능동 276일대	4,200	-	-	서울시고시 제1992-420호 (1992.12.14)	도시철도 (7호선 군자역)
변경	철도	도시철도 (군자정차장)	광진구 군자동 497일대	4,200	50	4,250	서울시고시 제1992-420호 (1992.12.14)	도시철도 (7호선 군자역)

-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철도 (도시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설치에 따른 면적 증가 증가)50㎡</li> <li>· 최초결정일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명 수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 이용 시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위하여 기존 지하철 출입구를 에스컬레이터로 신설하고자 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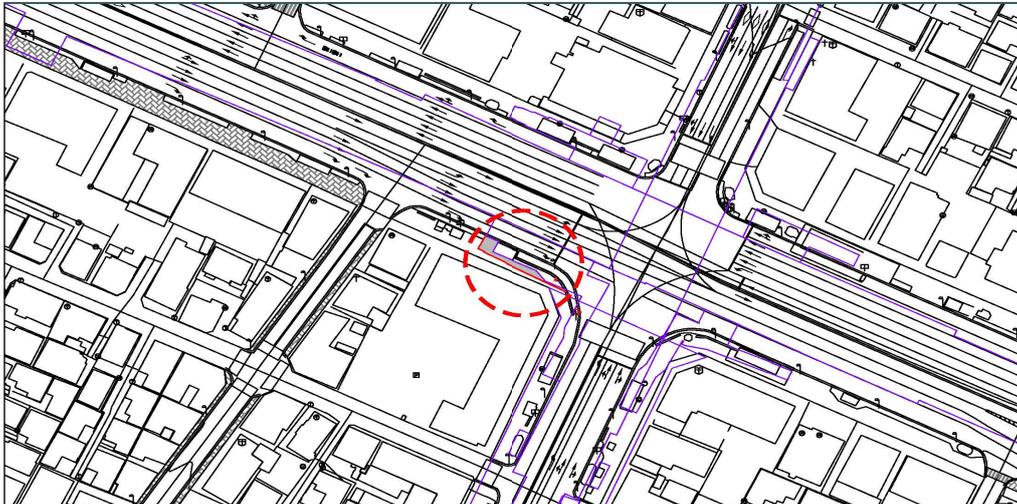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붙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02-450-769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범례
				기정	중	변경후			
기정	철도	도시철도 (군자정차장)	성동구 능동 278필대 (왕건구 군자동 497필대)	4,200			서울시고시 제1992-420호 (1992.12.14)	도시철도 17호선 (군자역)	SCALE = 1:1,000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범례
				기정	중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군자정차장)	성동구 능동 278필대 (왕건구 군자동 497필대)	4,200	50	4,250	서울시고시 제1992-420호 (1992.12.14)	도시철도 17호선 (군자역)	SCALE = 1:1,000 

◆ 동작구고시 제2019-8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수립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18-105번지 일대(舊 범진여객 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동 작 구 청 장

1. 제한지역

- 가. 위치 : 동작구 사당동 318-105번지 일대(舊 범진여객 부지)
- 나. 면적 : 3,157㎡

2. 제한사유

- 가. 대상지는 사당동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남성역 일대를 동작 제2경제축으로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으로 결정할 예정으로
- 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

3. 제한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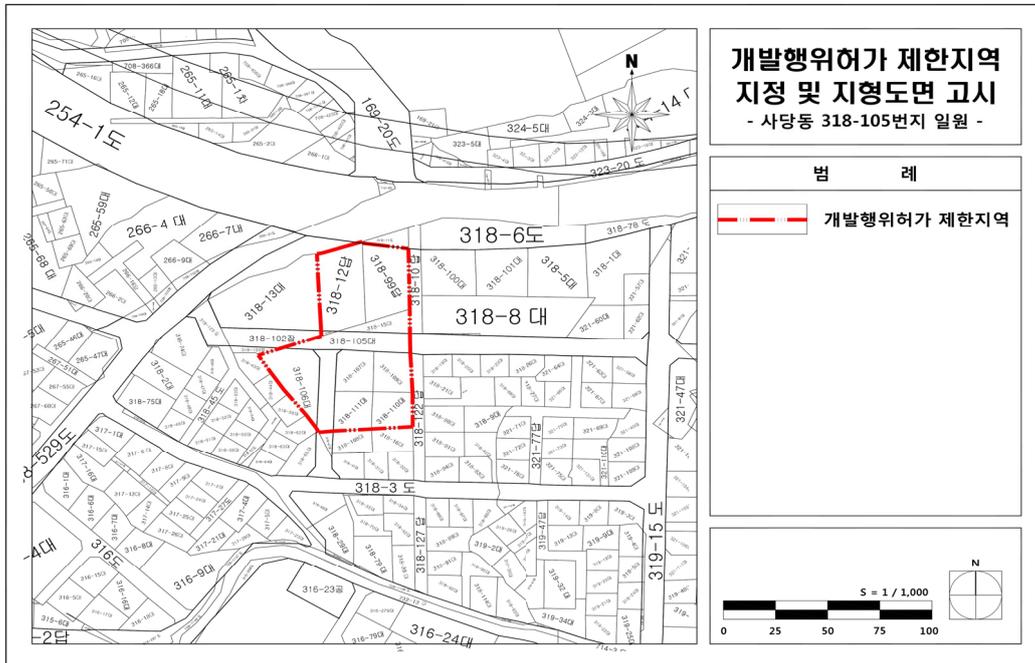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나.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보수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건축허가·신고
  -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수선 및 재축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

4.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간(2년 연장 가능)

※ 제한기간 중이라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해제

5. 관계도서 : 생략(동작구청 도시계획과 비치)

6. 기타사항 : 도면 열람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96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고시 제2019-9호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5호(2015.10.29.)로 결정(변경) 고시된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사당동 1042-23 토지소유자로부터 주차출입구 위치 변경 제안이 있어, 2019년 제1차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2019.01.10.) 심의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주차출입구 위치)을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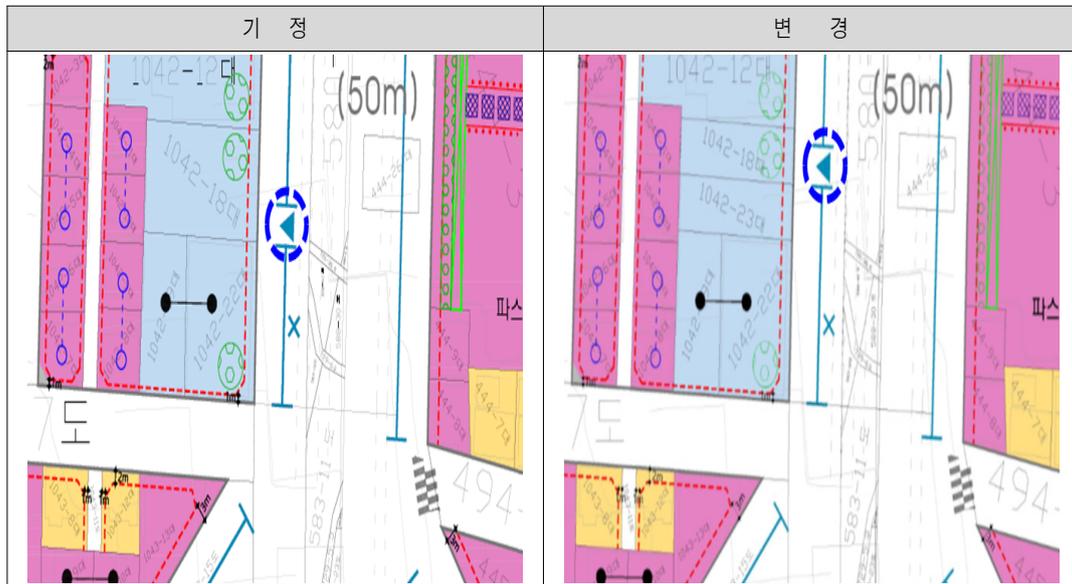
2019년 1월 24일  
동 작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고시(2015.10.29.) 이후 사당동 1042-18 필지 분할에 따른 맹지발생으로 현재 사당동 1042-23에 위치한 주차출입구를 사당동 1042-18 대지로 위치를 변경함.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1)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주차출입구

구분	위치	계획내용		
주차출입구	사당동 1042-18,23 (동작대로변)	주차출입구 위치 변경 (사당동 1042-23 → 사당동 1042-18)	기정	이면도로 진출입동선계획이 불가한 사당동 1042-18 필지의 맹지화를 방지하고자 간선가로변(동작대로변)에 주차출입구 허용
			변경	상기 필지가 분할되어 1042-18 필지에 허용되었던 주차출입구가 1042-23에 위치하게 되면서 1042-18 필지는 지구단위 계획상 맹지가 됨. 따라서 1042-18 필지의 맹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042-23에 위치한 주차출입구를 1042-18로 위치 변경

3.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4.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 5.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666)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관악구고시 제2019-9호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20호(2014.1.16.)로 결정된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계획 변경(공동개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관 약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림동 706-6 일대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에 오기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비고
지 번	획지계획	지 번	획지계획	
신림동 706-6 신림동 706-91 신림동 808-324(일부)	공동개발 (지정)	신림동 706-6(일부) 신림동 706-91 신림동 808-324(일부)	공동개발 (지정)	
신림동 706-92 신림동 808-324(일부)		706-6(일부) 신림동 706-92 신림동 808-324(일부)		

3. 기타 세부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4. 열람 및 열람 장소

- 세부내용은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6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고시 제2019-1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호(2005.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호(2006.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72호(2010.1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3호(2015.8.27.), 서울특별시고시제2018-231호(2018.7.19.)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8-1740호(2018.11.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8-185호(2018.12.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아리수로(동명근린공원)~천호대로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 토지분할 완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고덕로79길(동명근린공원일대)  
상암로79길(명일근린공원일대)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사업의 명칭 : 아리수로(동명근린공원)~천호대로간(舊계내길) 도로확장 공사
4.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 20~30m, 연장 1,175m
5.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도로과 3425-6344)
6.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9. 12. 31일 까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수용 및 사용 할 토지조사서**

- 사업 명 : 아리수로(동명근린공원)~천호대로간(舊계내길)도로확장 공사
-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1	당초	고덕동 150	8,834.9	2,759.0	도		강동구			
	변경	고덕동 150	8,834.9	2,759.0	도		강동구			
2	당초	고덕동 211	9,005.1	36.0	도		강동구			
	변경	고덕동 211	9,005.1	36.0	도		강동구			
3	당초	고덕동 215	66,237.5	1,175.0	공		강동구			
	변경	고덕동 215-2	1,174.2	1,174.2	공		강동구			
4	당초	고덕동 216	6,117.5	1,336.0	도		강동구			
	변경	고덕동 216	6,117.5	1,336.0	도		강동구			
5	당초	상일동 133	13,778.1	75.0	도		서울특별시			
	변경	상일동 133	13,778.1	75.0	도		서울특별시			
6	당초	상일동 168	47,423.1	7,209.0	도		서울특별시			
	변경	상일동 168	47,423.1	7,209.0	도		서울특별시			
7	당초	상일동 163-4	1,096.7	30.0	도		강동구			
	변경	상일동 163-4	1,096.7	30.0	도		강동구			
8	당초	상일동 산26-9	2,055.0	15.0	공		서울특별시			
	변경	상일동 산26-11	80	80	공		서울특별시			

9	당초	상일동	184	567.3	34.0	공	서울특별시					
	변경	상일동	184-1	33.6	33.6	공	서울특별시					
	당초	상일동	산25	5,097.0	2.0	공	서울특별시					
10	변경	상일동	산25-1	4.0	4.0	공	서울특별시					
	당초	상일동	183-1	4,741.1	2,982.0	공	서울특별시					
11	변경	상일동	183-4	2,981.3	2,981.3	공	서울특별시					
							유*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565 **아파트 1*04				
12	당초	상일동	산20-1	4,457.0	481.0	임	여*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로 7*(**동)				
							최*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63-**(***동)				
							유*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565 **아파트 1*04				
13	변경	상일동	산20-6	719	719	임	여*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로 7*(**동)				
							최*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53-**(***동)				
	당초	상일동	산21-1	2,050.0	16.0	임	박*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241-21 ***아파트 7동 2*7호	쥬드림** 은행	대구광역시 중구 ***동 **(**출장소)	근저당권	
14	변경	상일동	산21-5	35	35	임	박*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241-21 ***아파트 7동 2*7호	쥬드림** 은행	대구광역시 중구 ***동 **(**출장소)	근저당권	
	당초	상일동	산21-4	1,000.0	61.0	공	서울특별시					
15	변경	상일동	산21-6	130	130	공	서울특별시					
	당초	상일동	181	6,005.2	2.0	도	강동구					
	변경	상일동	181	6,005.2	2.0	도	강동구					

**구 공 고**

◆ 성동구공고 제2019-54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공고**

1.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계획과(☎2286-5554), 토목과(☎2286-5766), 공원녹지과(☎2286-565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24일  
성 동 구 청 장

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별	시 행 기 간						비고
	계			1단계(1~3년차)			
	건수	면 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 적(㎡)	사업비(백만원)	
계	24	104,149	78,090	24	104,149	78,090	
도로	23	40,738	68,280	23	40,738	68,280	
공원	1	63,411	9,810	1	63,411	9,810	

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시 설 명	위 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실효 시기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방비				민간
									계	시비	구비		
도로	성수동1가 26-1~72-14	1	2020	10	290	2,820	900		900		900		2020
도로	사근동 189-1~199-4	2	2020	6	66	627	1,000		1,000		1,000		2020
도로	성수동1가 656-3-656-98	3	2020	6	358	2,172	9,638		9,038		9,038		2020
도로	성수동2가 255-4-269-179	4	2020	6	120	781	1,528		1,528		1,528		2020
도로	마장동 361-6-382-1	5	2020	4	150	773	150		150		150		2020
도로	행당동 19-46-158-91	6	2020	6	191	1,191	1,787		1,787		1,787		2020
도로	성수동1가 656-1169-656-727	7	2020	4-5	62	292	553		553		553		2020
도로	성수동1가 656-641-656-755	8	2020	12	168	2,358	3,700		3,700		3,700		2020
도로	성수동1가 656-284-656-1608	9	2020	8	96	833	531		531		531		2020

도로	성수동1가 656-1076-656-1027	10	2020	6	120	798	2,064		2,064		2,064		2020
도로	성수동1가 659-9-656-323	11	2020	6	207	1,292	1,932		1,932		1,932		2020
도로	성수동1가 656-504-656-1222	12	2020	8	165	1,475	4,301		4,301		4,301		2020
도로	성수동1가 656-1657-656-28	13	2020	6	140	1,000	1,721		1,721		1,721		2020
도로	성수동1가 33-17-33-5	14	2020	6	150	856	2,716		2,716		2,716		2020
도로	성수동2가 269-115-268-2	15	2020	8	282	2,260	9,422		9,422		9,422		2020
도로	도선동 39-2-35	16	2020	12	127	1,505	568					568	2020
도로	하왕십리동 979-1-행당동300-1	17	2020	4~6	134	726	875		875		875		2020
도로	행당동 191-2	18	2020	6	34	215	200		200		200		2020
도로	마장동 498~439	19	2020	12	630	7,709	2,254		2,254		2,254		2020
도로	마장동 517~501	20	2020	12	630	8,262	6,094		6,094		6,094		2020
도로	금호동3가 282-286	21	2021	4	38	180	1,482		1,482		1,482		2021
도로	금호동4가 535-547	22	2021	12	108	1,317	9,780					9,780	2021
도로	행당동 294-1-292-41	23	2021	8	153	1,296	5,084					5,084	2021
	1단계(1~3년차) 사업시행					40,738	68,280		52,248		52,248	15,432	
	소 계(도로)					40,738	68,280		52,248		52,248	15,432	
공 원	옥수동 선1-1번지 일대 (달맞이근린공원)	1	2019~ 2020			63,411	9,810		9,810	925	8,885		2020
	1단계(1~3년차) 사업시행					63,411	9,810		9,810	925	8,885		
	소 계(공원)					63,411	9,810		9,810	925	8,885		
	계	24				104,149	78,090		62,058	925	61,133	15,432	

다. 관련도면 : 실음 생략. 끝.

◆ 광진구공고 제2019-52호

**대부중개업체 소재확인 공고**

우리구에 등록된 아래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광진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중개업체 소재확인 공고

2. 공고대상

상호/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에정내용
S대부중개/ 박종배	광진구 용마산로22길 5, 201호	소재불명	등록취소

3. 공고기간 : 2019. 1. 16. ~ 2. 23.(39일간)

4. 공고내용

가.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의 소재불명, 연락불가로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오니, 공고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의견제출 및 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까지 의견제출 및 통지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이 제한됩니다.(동법 제4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공고 제2019-112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19호(2018.7.1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도봉구 창동 산137-7일대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3.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091-37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4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137-7 일대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초안산근린공원 조성
- 라.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면 적 : 11,545㎡
  - 내 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작성 고시일로부터 2년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등 : 따로붙임
-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18:00)
- 아. 열람장소 : 도봉구청 공원녹지과(☎02-2091-3753/도봉구 마들로 656번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22,504	11,545								
1	창동 산137-7	임야	11,107	6,467	유호상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노드릿지시 파인헤븐 외이 18824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정수과-19994)	임류		
					안희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27길 52-5(안암동5가)	1514.83 /9089					
					안재현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14-3 대치삼성아파트 104-406	757.42 /9089					
2	창동 산160-1	임야	9,089	2,837	안나현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14-3 대치삼성아파트 104-406	757.42 /9089					
					안기성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노스 밴쿠버 록크리프 로드 2023	1514.83 /9089					
					안이현	캐나다 마니토바 위니펙 90 계리 스트리트 601	1514.83 /9089	서울시 강남구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세무관리과-21754)	임류		
3	창동 산179-2	임야	2,308	2,241	안기창	서울 성북구 돈암동 15-1 삼성아파트 106-507	3029.67 /9089					
					한연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 69-10 (수유동)						

◆도봉구공고 제2019-113호

**도시계획시설[둘리쌍문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08.06.)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2호(2017.01.2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봉구 쌍문동 산75-4번지 일대 둘리(쌍문)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3.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091-37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4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75-4 일대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둘리(쌍문)근린공원 조성

라. 사업의 내용 및 규모

- 면 적 : 13,722.4㎡
- 내 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작성 고시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등 : 따로붙임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18:00)

아. 열람장소 : 도봉구청 공원녹지과(☎02-2091-3753/도봉구 마들길 656번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성 명	소 유 자		지 분	성명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주 소	주소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42,545	13,722.4								
1	쌍문동 산75-4	임야	4,990	4,940.1	학교법인 세그루 학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53 (쌍문동)			한국전력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구분지상권 설정	
2	쌍문동 산81	임야	793	655.8	홍성환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7						
					김관일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수레로 1번길 5	18.889 /200					
					김소연	경기도 화성시 동탄숲속로 68, 877동 2002호(능동, 동탄숲속마을 자연엔데시아파트)	6.2962 /200					
					김유림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42, 106동 1403호(금곡동,신성푸른솔아파트)	6.2962 /200					
					이규관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77, 504동 2102호 (수택동,금호아파트)	12.5926 /200					
					이지영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77, 504동 2102호 (수택동,금호아파트)	12.5926 /200					
3	쌍문동 산83-2	임야	19,799	4,913	김인애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로36길 27, 103동 1305호(장위동,꿈의숲대명루첸 아파트)	31.4816 /200					
					윤정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2길 9-20, 401호(방배동)	10.074 /200					
					양민식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길 23, 107동 901호(신당동,신당삼성아파트)	2.5188 /200					
					최선웅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14, 104동 1802호 (인창동,현대아파트)	15/200		우과보임 협동조합	전라남도 곡성군 옥곡면 대학로 142	근저당권 설정	
					류영현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56, 310동 1702호(인창동,삼보아파트)	15/200					

3	쌍문동 신83-2	임야	19,799	4,913	정동민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덕소로97번길 101, 103동 403호(동부센트레빌아파트)	6.2962 /200		
					장영심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덕소로97번길 101, 103동 403호(동부센트레빌아파트)	6.2962 /200		
					조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46길 18, 602호(공릉동,운택노블레스)	6.2962 /200		
					방희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46길 18, 602호(공릉동,운택노블레스)	6.2962 /200		
					조재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1길 20-32, 비02호 (문정동, 두성빌라)	15.7408 /200		
					유재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1길 56, 9동 806호(문정동, 문정시영아파트)	15.7408 /200		
4	쌍문동 신83-3	임야	8,585	668.2	김금일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덕소로 270, 102동 1702호(한강우성아파트)	12.5926 /200		
					이현	서울 중구 장충동1가 105			
					홍성필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34			
					최덕철	서울 등대문구 회기동 75			
5	쌍문동 신238-15	임야	1,730	1,730					
6	쌍문동 신282-1	임야	6,648	815.3					

◆ 은평구공고 제2019-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2호(2015.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대조동 15-178~15-131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3.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은평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4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 위치 : 은평구 대조동 15-178~15-131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대조동 15-131 도로개설

다. 사업시행 규모 : 도로(B=6m, L=17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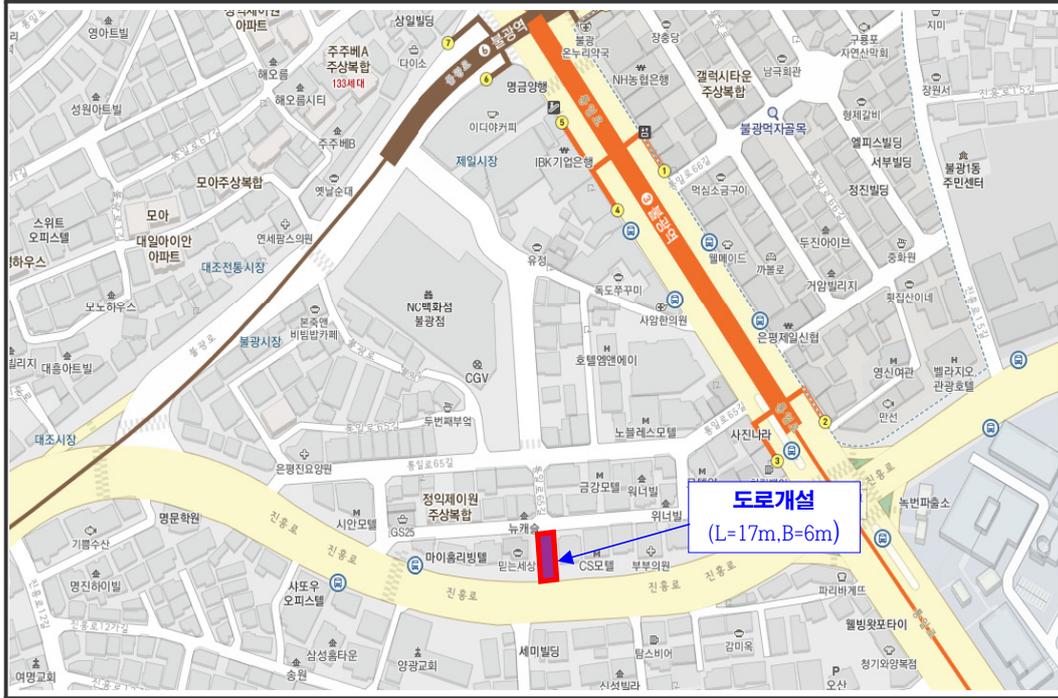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 조서 등 : 별첨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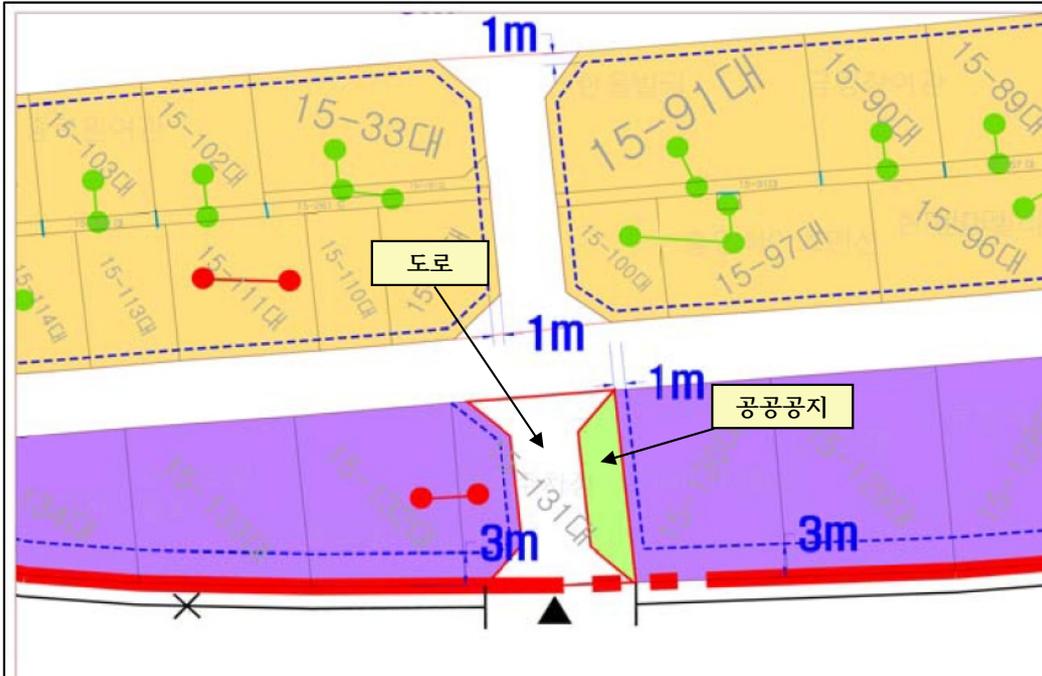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로과(본관 5층)(☎02-351-7904)

□ 위치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도



###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대조동 15-131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등	번지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대조동	15-130	대	241	2	이원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21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불광역지점)	근저당권	
2	대조동	15-131	대	184	131	윤호균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70-22	1/2				
						이경희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70-22	1/2				

### 물 건 조 서

○ 사업명 : 대조동 15-131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대조동 15-130	담장	적벽돌 (2000×200×800)	1식	이원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21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불광역지점)	근저당권	
		화단	적벽돌 (5000×100×200)	1식							

◆ 구로구공고 제2019-8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열람공고**

1. 구로구 가리봉동 126-4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4일  
구로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44), 도시재생과(☎860-3298)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guro.go.kr> → 고시·공고),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구로구 가리봉동 126-40 일대		증)3,708.2	3,708.2	-	· 주차장 (지하)

2)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주차장	- 주차장(3,708.2㎡) 신설	-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가리봉동 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지하)을 건설하여 주민편의 제공

라. 관련도면 : 생략(구로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구로구공고 제2019-10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구로구고시 제48호(2012.04.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고시된 『오남중학교 옆 도로개설

공사(2차)』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860-3128)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4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오류동 산 39-135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오남중학교 옆 도로개설공사(2차)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6m, 연장4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 사업의명칭 : 오남중학교 옆 도로개설공사(2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오류동 산39-135	임	101	101	김행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안곡로279번길 42,303동 703호				
2	오류동 산39-134	임	143	143	기획재정부					

◆ 구로구공고 제2019-10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82호(1973.11.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구로구 고시 제2018-227호 (18.11.22)로 실시계획 인가고시한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2차)』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860-3126)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4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512~685-20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2차)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2.3m, 연장81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토 지 조 서(당초)**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 사업의명칭 :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주변 도로개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구로동 685-539	잡	87	87	김관태	구로구 구로동 685-70 현대연예인아파트 203-1301			308분의275	구로동 685-363
					박진흙	구로구 구일로 94			308분의33	

**토 지 조 서(변경)**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 사업의명칭 :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주변 도로개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구로동 685-539	잡	87	87	구로구	구로구 가만산로 245				구로동 685-363
					김관태	구로구 구로동 685-70 현대연예인아파트 203-1301			308분의275	
2	구로동 685-363	잡	13	13	박진흙	구로구 구일로 94			308분의33	
					김관태	구로구 구로동 685-70 현대연예인아파트 203-1301			308분의275	
3	구로동 685-540	잡	84	84	박진흙	구로구 구일로 94				구로동 685-363
					김관태	구로구 구로동 685-70 현대연예인아파트 203-1301			308분의275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현대요트(주) (대표 이철웅)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14번길 *~**	행주대교 ~ 잠실대교	동력선(모터보트) 3척 - 블랙갯 - 블루버드 - 시그니처2호	수상레저사업	2019.1.1. ~ 2019.12.31	2019. 1.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씨에이글로벌(주) (대표 최준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3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35	- 유선장: 528.36㎡ (직·간접 점용 포함) - 둔 치 : 1,346.4㎡	유선사업	2019.1.1. ~ 2019.3.31.	2019. 1.18.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케이앤피 인베스트먼트(주) (대표 오주일)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 1,269㎡</li> <li>• 육상: 50㎡</li> </ul>	유선장 대체건조 공사 관련	2019.1.21. ~ 2019.4.20. (3개월)	2019. 1.21.

**사업소공고**

◆ **종로소방서공고 제2019-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종 로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종 (등급 및 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방시설관리업	제 서울(종로)- 2019-0001호 (2019.01.21.)	쥬피앤에이 엔지니어링 (685-81-00116)	조종선 이명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322호 (내수동, 경희궁의아침 3단지)	02-722-6077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종로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737-5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168-1번지 일원, 광진구 자양동 704번지 일원
  - 면 적 : 86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한강공원 접근을 위한 나들목 설치
  - 내 역
    - 옥수나들목
      - 통로박스 L=39m, B=6.2m
      - 경사로 L=25m, B=5.0m, 육갑문 1개소 등
    - 낙천정나들목
      - 통로박스 L=58.2m, B=6.2m
      - 엘리베이터 1개소 등
5. 점용기간 : (당초) 2013.11.05.~2018.11.04.  
(변경) 2018.11.05.~2023.11.04.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5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70-1
  - 면 적 : 일시점용 6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역난방 열수송관 보수공사
  - 내 역 : 열수송관 보수를 위한 굴착공사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9.01.18.~2019.03.31.(점용기간, 공사기간 동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37 외 11개소
- 면 적 : 일시점용 7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역난방 열수송관 보수공사
- 내 역 : 열수송관 보수를 위한 굴착공사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9.01.18.~2019.03.31.(점용기간, 공사기간 동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7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312-1 외 11개소
- 면 적 : 일시점용 7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역난방 열수송관 보수공사
- 내 역 : 열수송관 보수를 위한 굴착공사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9.01.18.~2019.03.31.(점용기간, 공사기간 동일)



#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